

**Deloitte.**

# 주식기준보상

*A guide to IFRS 2*

June 2007

An IAS Plus guide



Audit • Tax • Consulting • Financial Advisory •



## “주식기준보상-A guide to IFRS 2” 번역에 앞서

이 책은 저희 법인과 제휴관계에 있는 딜로이트의 “Share-based payments – A guide to IFRS 2”을 번역한 것입니다.

세계는 경제, 문화, 사회적인 면에서 빠른 속도로 Global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IFRS는 EU (European Union) 국가간 경제적 통합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유럽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회계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기업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신뢰성 증대를 위하여 110여개 국가에서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IFRS의 도입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특히, 해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IFRS의 도입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07년 3월 IFRS의 도입에 대한 Road Map을 발표하였으며, 기업 및 정부가 IFRS 도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Road Map에 의하면 모든 상장회사는 2011년까지 IFRS를 도입하여야 하며, 선택적으로 2009년부터 조기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IFRS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책을 번역한 목적은 이미 IFRS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IFRS적용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에 있어 실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발간한 다른 책들과 함께 이 책이 IFRS라는 거대한 숲속에서 작은 길잡이가 되어 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이나 IFRS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저희 법인의 IFRS 서비스그룹의 신용인 대표, 이길우 전무 또는 조성만 상무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양 승 우



## 자료의 활용에 관한 안내

여기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귀하의 이해 증진 및 참조를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포함한 Deloitte Touche Tohmatsu와 그 회사/관계회사는 회계 또는 기타 전문가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이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전문가 자문 등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귀하의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어떤 의사결정의 기초로 사용되어서도 안됩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포함한 Deloitte Touche Tohmatsu와 그 회사/관계회사는 이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초래될 어떤 손실에도 책임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이 자료에 IFRS의 관련 규정을 충실히 포함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특정 상황에 기초한 전문가적 판단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그러한 판단의 문제에 대해 소상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회사인 Deloitte Touche Tohmatsu가 2007년 6월에 발간한 자료를 번역한 역서입니다. 이후의 IFRS 제/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 자료의 내용은 Deloitte Touche Tohmatsu의 독창적인 창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모방을 일절 금지합니다.



# 목 차

1. 개요	8
2. 범위	9
2.1. 개요	9
2.2 연결실체	12
2.3 지분보유자로서 지분보유자와의 거래	13
2.4 사업결합	13
2.5 금융상품	14
2.6 재화나 용역을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 (IFRIC 8)	15
3. 인식	17
3.1 개요	17
3.2 시점	17
4. 측정 - 주식결제형 거래	19
4.1 개요	19
4.2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결정	21
4.3 가득조건의 회계처리	34
4.4 재부여특성	46
4.5 가득일 이후의 조정	46
4.6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47
4.7 주가가 외화로 표시된 경우	50
5. 조건변경(취소 및 중도청산 포함)	51
5.1 조건변경	51
5.2 취소 및 중도청산	55
6. 측정 - 현금결제형 거래	58

6.1 기본 요건	58
6.2 가득조건의 회계처리	60
6.3 부채의 공시	61
6.4 외화로 표시된 주가	61
7.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62
7.1 기본 원칙	62
7.2 거래상대방의 선택권	62
7.3 기업의 선택권	65
7.4 결제방법의 변경	68
7.5 결제방법 선택이 우발적인 경우	70
8. 공시와 표시	71
8.1 주식기준보상의 성격과 범위	71
8.2 공정가치 결정방법	72
8.3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효과	73
8.4 공시사항의 예시	73
8.5 적립금의 변동	74
9. IFRS의 최초채택	76
9.1 지분상품	76
9.2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	78
10. 종업원주식소유신탁	79
11. 세금	81
12. 연결실체내에 있는 기업의 회계처리	82
12.1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을 수반하는 주식기준보상약정	82
12.2 지배기업의 지분상품을 수반하는 주식기준보상약정	83
12.3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	86
12.4 연결실체내 대가청구시 회계처리	88



12.5 연결재무제표에서의 현금결제형 약정	92
12.6 ESOP신탁의 효과	94
12.7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94
13.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96
부록 1 - IFRS와 US GAAP의 비교	100
부록 2 - 평가모형	101
부록 3 - 표시 및 공시사항 점검표	104

# 1. 개요

2004년 IFRS 2 “주식기준보상”의 공표 전까지는 이러한 거래 등에 대한 인식 및 측정을 설명하는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가 없었다. 이러한 회계기준서의 부재는 특히, 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기구)가 2000년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005년부터 시행된 동 기준서의 발행과 더불어 두 개의 해설서 – IFRIC 8, “IFRS 2의 적용범위” (2006년 1월 공표) 및 IFRIC 11 “연결실체 및 자기주식거래” (2006년 11월 공표) – 가 준비되었다. 또한, IASB에 의해 최근에 가독조건 및 취소에 관한 기준서 개정안이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 허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 내재되어 있는 주관적인 요소 및 주식기준보상의 광범위한 영역 등으로 인하여 IFRS 2의 적용은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IFRS 2에 대한 자세한 조문 설명과 함께 이 책은 여러 실무 지침도 포함하고 있다. 무엇이 “정확한 정답”인가에 관해 명확히 답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항상 가능하지는 않지만, 이 기준서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해결방안 및 이 방안에 대한 접근방법을 독자와 공유하려 한다.

2004년에 IFRS 2가 공표될 때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보상비용을 손익계산서에 주식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방법이 다소 혁명적으로 느껴졌었다. 3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당기손익의 “변동성증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재무제표의 작성자 및 이용자들이 용역제공자(종업원 및 기타 용역제공자)에게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할 때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개념에 일반적으로 익숙해져 있다.

현재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다소 실무적인 사항들이다. 예를 들면:

- 복잡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보상에 대한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현금 또는 주식결제형 거래를 언제 구분할 것인가?
- 제반 약정사항의 수정이 조건변경 및 대체를 의미하는 것인가?
- 다양한 거래유형 및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잠재적 결과를 포함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무에서 가장 공통적인 논제는 아마도 연결회사들의 개별 재무제표에서 주식기준보상에 (예컨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종업원에게 주식기준보상을 하였을 경우) 대한 회계처리일 것이다. IFRIC 11에서 부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많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유용한 지침으로 이 책이 사용되길 바란다.

## 2. 범위

### 2.1. 개요

#### 2.1.1. 정의

IFRS 2가 적용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sup>1</sup> 등)을 부여하거나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결제하는 거래” [IFRS 2 Appendix A]

IFRS 2에서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하는 기업과 거래상대방 사이(종업원을 포함함)의 계약으로서,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서 특정 가 득조건이 충족이 되면 거래상대방은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거나,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 되는 금액만큼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받을 수 있는 약정” [IFRS 2 Appendix A]

“지분상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계약” [IFRS 2 Appendix A]

이 정의는 IAS 32 “금융상품: 표시”의 문단 11과 일치한다.

“부여한(된) 지분상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업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로 넘겨준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 [IFRS 2 Appendix A]

IFRS 2 문단 5 (이하 “IFRS 2.5” 형식으로 표시함)에서 재화는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및 기타 비금융자산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기술하지 않고 있다. IFRIC 8 “IFRS 2의 적용범 위”는 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화나 용역이 반드시 식별가능한 것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 래 Section 2.6 참조).

<sup>1</sup>역주: IFRS 2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Share option" 또는 "Option"을 대체적으로 "주식선택권"으로 번역하였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옵션"으로 번역함.

## 2.1.2. 주식기준보상의 유형

3가지 거래 유형이 명시되어 있다. [IFRS 2.2]

-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또는 기타 자산)으로 결제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서, 추가차액보상권 거래가 포함됨
-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기업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결제방법으로 현금(또는 기타 자산)지급이나 기업의 지분상품발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래

이 지침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기술하듯이 IFRS 2는 상기 거래의 측정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Section 2.4와 2.5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사업결합' 및 'IAS 3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특정계약'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 2.1.3 IFRS 2와 IAS 32간의 상충

다음의 예제와 같이 IFRS 2에서의 부채와 자본의 구분은 IAS 32의 일반적인 규정과 다르다.

### 예제 2.1.3.

#### 주식결제 또는 현금결제

A사는 한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 1,000개를 부여하였으며 주당 행사가격은 CU15이다. 가득기간 종료 후 그 종업원은 주식선택권의 "내재가치"에 상응하는 주식(아래 주식결제형 추가차액보상권으로 불리우는)을 받을 것이다. 주식선택권의 내재가치는 (1)과 (2)의 차이금액을 말한다.

- (1) 종업원이 청약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의 공정가치
- (2) 종업원이 주식에 대해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 (상기 예에서 CU15)

주식선택권은 지분상품의 인도를 통하여 결제가 되므로 주식결제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주식결제형 추가차액보상권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의 수량과 가치는 수시로 변동한다. IFRS 2, BC 106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IAS 32의 부채/자본 규정이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이 된다면 발행되는 주식수가 변동성이 있는 상품일 경우 부채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거래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유사하게 회계처리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분상품을 발행해야 하는 특정 의무를 부채로 분류해야 하는 IAS 32상의 부채/자본규정을 주식기준보상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IFRS 2, BC 107에서 설명하듯이 주식결제형 추가차액보상권은 IAS 32와 IFRS 2에서 서로 상이하게 회계처리되는 예이다.

### 2.1.4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식별

아래 예와 같이 IFRS 2의 적용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래들을 명쾌하게 식별하는 것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니다.

#### 예제 2.1.4

##### IFRS 2의 적용범위

L사는 임원이 공개시장에서 CU 100의 공정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CU 100을 무이자로 대출하였다. 매입한 주식은 해당임원에 대한 대출 관련 담보로 쓰여질 것이며 4년간의 가득기간 만기 전까지는 해당 임원이 팔 수 없다. 해당 임원이 4년의 가득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L사에 계속 고용되어 있다면 대출금 전액은 면제되며 주식과 관련된 모든 제한사항은 소멸될 것이다. 만약, 해당 임원이 L사와 고용계약이 유지되지 않아 가득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주식은 그 가치와 상관없이 L사에 반환되고 대출금액은 모두 상환된 것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해당 임원은 주식 가치 이상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거래의 실질은 4년이 지나야 가득이 되는 제한된 주식의 발행이므로 이러한 거래는 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제한된 주식의 부여일의 공정가치는 가득기간에 걸쳐 비용화해야 한다.

### 2.1.5 주주에 의한 보상

주주가 재화 또는 용역을 기업에 제공하는 상대방(종업원 포함)에게 기업의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경우 그러한 이전이 명백하게 재화나 용역의 대가 지불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이다. [IFRS 2.3]

주주가 종업원에게 우리사주제도 목적으로 주식을 제공할 때 이러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분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IFRS 2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은 때에 손익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주주가 가까운 친척인 기업의 종업원에게 주식을 선물로 제공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선물성 증여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의 일부분이 아닐 수도 있으나 각 유형별로 관련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로, 비슷한 보상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부여되었는지 여부와 선물로 준 주식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조건 등과 함께 부여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기업이 아닌 주주가 지분상품을 제공하는 가장 빈번한 사례는 연결실체 내의 주식기준보상거래이며, 이러한 경우는 Section 2.2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2.2 연결실체

### 2.2.1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종속기업의 종업원들은 용역제공대가의 일부분으로 종종 지배기업의 주식 또는 흔하지는 않지만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의 주식을 받는다. 이런 경우 IFRS 2는 용역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비용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행된 지분상품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일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된다.

재화나 용역을 기업에 제공한 상대방에게 지배회사의 지분상품, 또는 같은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는 이상 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 예제 2.2.1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거래에서 제공받은 용역

P사는 상장기업으로서 미국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P사는 IFRS를 적용하고 있는 S사의 최대주주이다. P사는 S사의 일부 종업원에게 P사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식선택권을 발행하였다.

S사는 종업원으로부터 근무용역을 제공받고 있으므로, S사나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주식선택권을 발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S사는 주식기준보상 관련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 P사가 주식선택권을 발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는 P사와 S사에 의해 자본출자로 인식될 것이다 (Chapter 12 참조).

### 2.2.2 관계회사 및 조인트벤처

IFRS 2.3은 투자자 또는 참여자로부터 관계기업 또는 조인트벤처의 종업원이 고용과 관련하여 지분상품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관계기업 또는 조인트벤처는 해당 종업원들로부터 근무용역을 제공받을 것이고 투자자 또는 참여자로부터 자본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사한 회계처리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2.2.3 기업의 정의

IFRS 2의 Appendix A에는 기업(Entity)에 관하여 여러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바, 연결실체 관련해서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IFRS 2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효익을 제공받은 기업은 반드시 비용을 인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배기업이 주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 거래는 자본출자의 성격으로 자본계정을 대기해야 한다. 그러나 IFRS 2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경우와 주식기준보상약정으로 인해 그룹사 상호간에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관련 약정이 연결실체의 관점에서는 주식결제형이나 종속기업의 관점에서는 현금결제형인 (또는 반대의 상황) 상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종업원들로부터 근무용역을 제공 받은 종속기업이 약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배기업의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 중 일부는 IFRIC 11 “IFRS 2 – 연결실체 주식거래 자기주식거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IFRIC 11의 규정 및 동 해석에서 특정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관련 이슈는 이 책의 Chapter 12에 언급되어 있다.

## 2.3 지분보유자로서 지분보유자와의 거래

종업원 등이 기업의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특정종류의 주식을 보유한 모든주주들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과 같이(a rights issue may be offered to all holders of a particular class of equity), 종업원 등이 단순히 주주라는 이유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당해 거래에 대해 IFRS 2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FRS2의 규정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에만 적용된다. [IFRS 2.4]

### 예제 2.3

#### IFRS 2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

D사는 종업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공정가치로 매입하였다. 이 거래는 자기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IFRS 2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D사가 종업원에게만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그 초과분은 보상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2.4 사업결합

IFRS 2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이 된다. 재화에는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및 기타 비금융 자산 등이 있다. 그러나, IFRS 3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으로 재화(취득하는 순자산의 일부를 말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IFRS 2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대가로 발행하는 주식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취득자의 종업원에게 근무용역의 대가로 부여한 지분상품은 종업원의 자격에 관계되므로 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사업결합이나 기타 지분구조개편 등의 이유로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도 IFRS 2를 적용한다. [IFRS 2.5]

사업결합과 연결되어 발행되는 지분상품이 취득대가의 일부(IFRS 2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인지 아니면 취득 후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의 대가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아래 예제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IFRS 2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예제 2.4

#### 사업결합

P사는 S사의 모든 유통주식을 현금 및 P사의 보통주식을 대가로 매수하였다. 사업결합은 매수법을 적용하였다. S사는 P사의 취득 전에는 S사의 경영진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취득일의 대가에 부가하여 P사는 향후 12개월에 걸쳐 매출이 CU 1억을 초과할 경우 이전 소유주에게 (P사의 보통주로) 추가적으로 조건부 보상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조건부 기간 동안 기존의 소유주 각자는 개별보상을 받기 위하여 새로운 회사(사업결합 후 회사)에 고용되어야 한다.

아래 기준은 조건부 보상이 (1) IFRS 3이 적용되는 피취득자에 대한 매수대가의 조정인지, 또는 (2) IFRS 2가 적용되는 근무용역에 대한 보상으로 회계처리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이 모든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계속 고용에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다.

계속근무와 조건부 보상과의 연관성: 고용의 종료와 상관없는 조건부 보상에 관한 약정은 조건부 보상이 급여라기 보다는 추가 매수원가라는 것을 암시하는 매우 강한 지표가 된다.

계속근무의 기간: 조건부 보상에 필요한 기간 또는 그 이상으로 계속근무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은 조건부 보상의 본질이 급여라는 것을 의미한다.

급여 수준: 조건부 보상 외의 기타 급여 수준이 결합 이후 회사의 여타 핵심 주요 종업원의 급여와 상응하는 수준일 경우, 조건부 급여는 근로 용역에 대한 급여라기 보다는 추가 매수원가로 봐야 할 것이다.

주주그룹의 구성과 관련된 요소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고용여부에 따라 조건부 보상이 기존 주주들과 다른 경우:

결합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기존 주주들이 받는 주당 조건부 보상이 결합기업의 종업원이 된 이전 주주들이 받는 주당 조건부 보상보다 낮은 경우, 종업원이 된 이전 주주에 대한 조건부보상의 추가금액은 근로조건에 대한 급여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강한 지표가 된다.

조건부 보상 조항이 매수약정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를 이해하면 계약의 실질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취득일에 지급된 최초 보상이 피취득자에 대한 가치평가액의 범위 중 낮은 금액으로 설정되었고 조건부 보상을 계산하는 방식이 그 가치평가방법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는, 조건부 보상이 추가 매수대가임을 의미한다. 대신에, 조건부 보상 방식이 기존의 이익분배약정과 일관성이 있다면 계약의 실질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건부 보상을 결정하기 위한 공식이나 모형에 대한 이해는 계약의 실질을 평가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이익의 5배를 지급하는 조건부 보상 약정은 피취득자의 공정가치를 확정 또는 확인하기 위한 공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이익의 10%를 지급하는 조건부 보상 약정은 이익분배계약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사업결합에서 조건부 보상으로 발행된 지분상품이 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인지 아니면 이전 주주에게 지급하는 매수대가의 일부부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든 사실에 대한 평가와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고용기간의 유지여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조건은 그러한 계약이 보상비용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므로 이 계약조건은 IFRS 2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5 금융상품

IAS 32 “금융상품: 표시”(문단 8 내지 10) 또는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5 내지 7)의 범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따라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 또는 제공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는 IFRS 2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IFRS 2.6]

현금이나 기타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차액결제가 가능하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을 통하여 결제가 가능한 비금융항목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에는, 마치 계약자체가 금융상품인 것처럼(하나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IAS 32와 IAS 39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IFRS 2, BC28에서는 IASB가 그러한 계약은 IAS 32와 IAS 39의 적용범위이므로 IFRS 2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제 2.5

IAS 32 및 IAS 39와의 상호 작용

C사는 1,000개의 상품을 C사의 보통주식 2,000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은 차액결제 가능하나 C사는 그렇게 할 의도는 없다 (관행적으로 차액결제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동 거래는 IFRS 2의 적용범위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C사가 이 계약을 차액결제할 경험이 있을 경우 또는 실물을 인도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동 선도계약은 IAS 32와 IAS 39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것이다.

2.6 재화나 용역을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 (IFRIC 8)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모두를 구체적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거래에 대한 IFRS 2의 적용여부는 IFRIC 8 “IFRS 2 적용범위” 에서 다루고 있다. 이 해석은 2006년 1월에 공표되었으며 2006년 5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조기적용이 권장되며 적용 시 동 해석은 IFRS 2의 경과규정에 따라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IFRS 2는 기업 또는 기업의 주주가 기업의 지분상품을 부여하거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된 가격만큼의 현금이나 기타 자산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채를 부담하는 거래에 적용이 된다. IFRIC 8은 현금 및 식별 가능한 비현금성 대가의 공정가치를 포함하여 기업이 제공받은 (또는 받기로 한) 식별가능한 대가가 부여한 지분상품 또는 부담한 부채의 공정가치보다 적은 거래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기준서의 문단 3 내지 6에 따라 IFRS 2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 해석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의 발행) [IFRIC 8.6]

IFRS 2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특정 거래 즉, 기업의 지분상품을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에 적용되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모두를 특정하여 식별하지 못하는 거래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IFRIC 8에서 확실히 하고 있다. [IFRIC 8.8]

재화나 용역을 특정하여 식별 가능하지 않더라도, 기타 제반 사항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거나 또는 받을 것이라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IFRS 2가 적용된다. 만약 제공받은 식별가능한 대가가 부여한 지분상품 또는 부담한 부채의 공정가치보다 적을 경우, 일반적으로 이는 다른 대가(식별이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IFRIC 8.9]

식별이 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IFRS 2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식별이 불가능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와 식별이 가능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식별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부여일에 측정하고 현금결제형 약정은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대차대조표일에 재측정한다. [IFRIC 8.10~12]

자선단체에 아무런 보상 없이 주식을 부여한 경우를 제공받았거나 제공받을 재화나 용역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IFRIC 8은 예시하고 있으며, 다른 거래상대방과 발생하는 거래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IFRIC 8.2]

IFRIC 8에서는 기업이 어떤 대가 없이 사회의 특정 집단에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기업의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혜택은 기업의 고객층의 확대, 종업원 고용 유치 및 유지, 계약 기회의 개선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법에 의해 시장가치보다 낮게 발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식별가능한 혜택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 IFRIC 이 적용되어야 하며 관련 비용도 인식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는 “사업의 지속을 위한 대가” 또는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될 것이다.

종업원이 아닌 상대방과의 거래에 대해서 IFRS 2는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는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라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가정을 하고 있다. IFRIC은 식별불가능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은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은 식별가능한 재화나 용역에만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식별이 불가능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가치는 지분상품의 가치를 통해 간접 측정하게 된다. [IFRIC 8,BC8]

이 접근법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장가치보다 크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시장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항상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재화나 종업원 외의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때마다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IFRIC 8, BC7에서 기술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가치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보다 낮아 보이는 경우에만 이런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식별이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을 획득했다라는 징후가 없는 이상 종업원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측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는 특정 주식기준보상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에 의해 기업의 주식 중 일부는 특정 국가의 국민에게만 발행되어야 하고, 또한 이 주식은 역시 동 국가의 국민에게만 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양도제한조항은 관련주식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식의 공정가치는 양도제한조항이 없는 동일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낮을 수 있다. 이러한 양도금지주식을 부여할 경우 IFRIC 8에서 말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는 양도제한주식의 공정가치이지 양도가능주식의 공정가치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IFRIC 8.5]

## 3. 인식

### 3.1 개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통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한다. 주식결제형 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상비용만큼 자본을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채를 인식한다. [IFRS 2.7]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IFRS 2.8]

일반적으로 용역은 제공받은 즉시 소비되므로 공급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화는 일정기간에 걸쳐 소비될 수도 있고 재고자산처럼 나중에 판매될 수도 있으므로 재화는 소비되거나 판매되는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제공받은 재화가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비되기 이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연구단계에서 취득하는 재화는 즉시 소비되지 않더라도 관련 IFRS 기준에 따라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IFRS 2.9]

### 3.2 시점

상기 3.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은 제공받은 때에 인식하여야 한다. 보통 재화는 제공 받은 시점이 비교적 간단하게 파악이 되나 용역을 제공받은 시점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3.2.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인식시점과 관련하여 “가득(vesting)”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바, IFRS 2는 가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권리가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기타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는 특정 가득조건이 충족될 때 가득된다.” [IFRS 2 Appendix A]

만약 부여한 지분상품이 즉시 가득 된다면, 반증이 없는 한 지분상품에 대한 대가(임직원의 근무용역 등)를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대가(예: 비용 또는 자산)는 전부 보상비용으로 인식하고 동일한 금액만큼 자본을 증가시켜야 한다. [IFRS 2.14]

만약 지분상품이 즉시 가득되지 않는다면 IFRS 2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 2개의 용어가 중요하다.

“가득조건”이란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기타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말하며, 가득조건에는 일정한 용역제공기간을 채울 것을 요구하는 용역제공조건과 거래상대방이 특정 목표성과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성과조건(일정기간 기업이익의 특정한 증가)이 있다. [IFRS 2 Appendix A]

2007년 6월에 IASB는 가득조건과 취소에 관한 최종안인 IFRS 2 개정안을 공표하였다. 이 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2007 개정안은 가득조건은 용역제공조건 또는 성과조건 중의 하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용역제공조건 또는 성과조건이 아닌 비가득조건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2007 개정안은 성과조건을 거래상대방이 특정 용역제공기간을 채우고 특정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비가득조건의 예로 종업원이 “정기적립저축제도(Save As You Earn)”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들고 있다.

개정안의 결론도출근거에서, 성과조건과 비가득조건을 구별하는 기준은 성과조건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용역제공을 요구하는 반면 비가득조건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득기간”이란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지정하는 가득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IFRS 2 Appendix A]

만약 거래상대방이 명시된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 된다면 용역기간이 가득기간인 것으로 본다. 용역은 거래상대방이 가득기간 동안 해당 용역을 제공할 때 인식하며 동일한 금액을 자본으로 회계처리한다. [IFRS 2.15]

간단한 예로는 종업원에게 3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이 예에서는 3년의 가득기간 동안 비용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IFRS 2.15(a)] 그러나, 만약 올해 이후 3 회계연도 동안 회사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보통 IFRS 2에 따라 관련 비용은 부여일부터 시작하여 4년간의 가득기간 동안 인식될 것이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가득조건은 종업원이 4년간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여일 이후 올해 남은 기간과 후속 3개년 동안의 근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종업원에게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가득기간은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선택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근무용역을 미래의 기대 가득기간에 걸쳐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기대가득기간은 부여일 현재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성과조건의 결과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성과조건이 시장조건(Chapter 4 참조)인 경우에는 기대가득기간의 추정치는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가정과 일관되어야 하며 이후에 수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성과조건이 시장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기대가득기간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추정치를 변경한다. [IFRS 2.15(b)]

### 3.2.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IFRS 2.32에서는 상기 Section 3.2.1에서 언급한 원칙 또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에 대한 대가는 용역을 제공받을 때(제공받은 즉시 또는 가득기간에 걸쳐서) 그에 상응하는 부채와 함께 인식한다.

선택형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 (Chapter 7 참조).

## 4. 측정: 주식결제형 거래

### 4.1 개요

#### 4.1.1 공정가치

주식결제형거래의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라 함은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간 간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상환되거나 부여된 지분상품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IFRS 2 Appendix A]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지 않는 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그러나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IFRS 2.10] 측정기준일에 부여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지 않는데, 이에 대한 제한된 예외조항이 있다. 이 예외조항은 Section 4.6에서 살펴볼 것이다.

#### 4.1.2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와의 거래

IASB는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거래에서는 “제공받은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한다. [IFRS 2.11~12]

IFRS 2는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한다.

- (1) 법률상 또는 세무상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개인
  - (2) 법률상 또는 세무상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개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의 지휘를 받으며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 (3) 제공하는 용역이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과 비슷한 개인
- 예를 들어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에는 사외이사 등 기업의 활동을 계획, 지휘, 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 모든 관리자가 포함된다. [IFRS 2 Appendix A]

이 책자에서 사용하는 ‘종업원’이라는 용어에는 유사용역제공자가 포함된다.

개인이 종업원과 유사한지에 대한 결정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아래 요소들은 종업원 또는 유사용역제공자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 구매기업이 개인으로부터의 실제 성과물이 아닌 그 개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개인의 작업중단시간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
- 구매기업의 직접 감독하에 있는 경우
- 계약이 특정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의존하는 경우
- 특정 기간 동안 개인으로부터의 성과물을 실질적으로 모두 구매기업이 제공받는 경우
- 개인이 현재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가 아닌 경우를 나타내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종업원이 법률상 제공할 수 없는 용역을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
- 개인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이 법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종업원이 아닌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 공정가치는 관련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측정되어야 하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이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우 공정가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측정하며 측정기준일은 관련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로 한다. [IFRS 2.13]

### 4.1.3 복수의 측정기준일

재화나 용역을 1일 이상의 기간 동안에 제공을 받는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각각의 날에 측정되어야 한다. [IFRS 2.IG6]

어떤 경우에는 근사치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용역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을 받고 그 기간 동안 주가가 중요하게 변동하지 않는다면 6개월 동안의 평균주가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IFRS 2.IG7]

#### 예제 4.1 A

##### 종업원이 아닌 자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서의 주식발행

개인회사인 P사는 현재 P사가 고소를 당한 소송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무리 한 대가로 외부변호사들에게 주식을 발행한다. 그 변호사들은 이 소송을 위하여 100시간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사들로부터 받은 최근 계산서에 근거하여 P사는 시간당 CU300의 금액으로 제공받은 용역을 측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

이 가능하므로 P사는 CU30,000 (100 X CU300)의 보상비용을 인식할 것이며 변호사들에게 부여한 주식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예제 4.1 B

##### 공정가치평가목적의 측정기준일

G사는 신생기업으로 자사의 웹사이트를 구축하려 한다. G사는 3월 15일에 공급자인 W사를 접촉하여 W사가 G사의 지시에 따라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경우 G사의 주식 100주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6개월간 유효하며 공급자인 W사는 이러한 G사의 제안을 수락도 하지 않고 거절 하지 않는다. 6월 30일 W사는 G사의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대가로 100주를 받기로 합의한다. 10월 30일 구축된 웹사이트는 G사에 양도되고 같은 날 G사는 자사의 100주를 W사에 양도한다.

G사는 제공받은 용역의 공정가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하여 부여한 주식의 공정가치를 통하여 주식기준보상을 측정하기로 하였다.

IFRS 2하에서 측정기준일은 10월 30일이 될 것이다. 종업원(및 유사용역 제공자)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측정기준일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는 날”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100주는 10월 30일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될 것이다. W사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고 부여받은 주식이 모두 가득이 되므로 공정가치만큼 비용화하거나 IAS 38 “무형자산”에 근거하여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G사가 6월 30일 중간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 IFRS 2에 따르면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중간비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G사는 그러한 계약이 중요할 경우에만 동 계약을 공시만 하면 된다.

## 4.2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결정

### 4.2.1 측정기준일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통하여 거래가 측정이 되는 경우 그러한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IFRS 2에서 정의된 “측정기준일”에 결정되어야 한다.

“측정기준일이란 IFRS에 따라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일을 의미한다.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부여일을 측정기준일로 한다. 종업원 및 유사용역 제공자가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측정기준일로 한다.” [IFRS 2 Appendix A]

상기 정의에서 사용한 ‘부여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부여일이란 기업과 거래상대방(종업원 포함)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 즉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거래조건에 대하여 공통으로 이해한 날을 말한다. 부여일에 기업은 일정한 가득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현금, 기타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부여일은 승인이 이루어진 날로 한다.” [IFRS 2 Appendix A]

#### 예제 4.2.1A

##### 부여일

20X1년 1월 1일 A사와 개별임원들간에 A사가 각 임원들에게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1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매출 및 순이익의 성장률을 고려한 평가기법에 따라 주식수량이 정해질 것이다. 20X2년 3월 31일에 공표될 감사받은 재무재표상의 매출 및 이익의 성장률에 따라 A사는 0에서 100주의 제약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한된 주식은 향후 3년 마지막 날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가득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 임원들이 제약이 있는 주식을 팔 수 있는 가장 빠른 일자 는 20X4년 종료일이다. 이사회는 이를 승인하였으며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치 않다. 여기서 발생하는 의문점은 부여일이 20X1년 1월 1일인지 20X2년 3월 31일인지이다.

부여일은 “기업과 거래상대방(종업원 포함)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 즉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거래조건에 대하여 공통으로 이해한 날”을 말한다. 20X1년 1월 1일에 해당 당사자들이 모든 거래조건을 이해하였으므로 이 날을 부여일로 인식해야 한다.

가득될 주식수량에 대한 추정은 20X1년 1월 1일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가치는 각 개별주식에 할당된다. 주식기준 보상 거래의 방식은 IFRS 2에 있는 조정(True-up)방식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비시장 가득조건이므로 주식수량은 실제로 임원들에게 발행되는 제약이 있는 주식수에 기초하여 20X2년 3월 31일에 조정한다. 개별주식의 공정가치는 20X1년 1월 1일의 가치에 따라 정해진다.

2개의 중요 요소가 부여일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 양 당사자에 주식기준보상을 “합의”할 필요가 있으며
- 양 당사자는 거래조건에 대하여 공통으로 이해해야 한다.

“합의”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므로, 계약의 제안과 수락이 있어야 한다. 부여일은 상대방이 계약을 수락한 날이지 계약을 제안한 날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합의가 분명히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예: 공식문서에 대한 서명누락) 이러한 경우는 주로 종업원과 맺은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근무용역 제공의 시작이 종업원이 합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IFRS 2.IG2]

계약 당사자 양측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를 한 경우에 양측은 거래조건에 대하여 공통으로 이해해야 한다. 약정사항 중 특정 조건은 특정일에 합의가 되고 나머지 조건은 차후에 합의가 된다면 부여일은 나머지 조건이 합의가 되어 모든 거래조건이 합의되는 날이다. 예를 들어,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행사가격이 3개월 뒤에 열리는 급여위원회에 의



해 결정이 되는 경우 부여일은 급여위원회에서 행사가격이 확정되는 때이다. [IFRS 2.1G3]

상기에 기술되어 있는 예제는 예제 4.2.1A에 기술된 내용과는 다르다. 예제 4.2.1A에서는 발행될 제한된 주식의 수량이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었으나, 상기 예제의 경우는 급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사가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행사가격이 급여위원회에서 결정될 때까지는 가격이 합의된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종업원들이 용역을 제공한 후에 부여일이 도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분상품의 부여가 주주의 동의여부에 달려있다면 부여일은 종업원이 용역제공을 개시한 몇 개월 후에 도래할 수 있다. IFRS는 용역을 제공받을 때 관련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용역제공 시작일과 부여일 사이에 제공받을 용역을 인식할 목적으로 기업은 예상되는 부여일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예: 보고기간의 종료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추정)를 추정해야 한다. 부여일이 확정되면 회사는 기존 추정치를 변경하여 궁극적으로 부여일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금액을 인식해야 한다. [IFRS 2.1G4]

아래 예제에서는 부여일을 정하는데 있어서 종업원의 수락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예제 4.2.1B

##### 종업원의 수락 조건이 부여일 판정에 미치는 영향

B국가에서는 개인에 대하여 주식기준보상을 받은 기간에 세금을 부과한다. 종업원들에게 주식기준보상을 제공하기 전에 X사는 각 종업원에게 주식수량, 주식선택권 및 행사가격을 기록한 제안서를 우선 제시한다. 각 종업원은 주식선택권을 수락할 경우 제안서를 30일 안에 회사에 되돌려줘야 한다.

제안일 또는 수락일 중 언제가 부여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거절 또는 수락의 필요성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냐에 대한 결정은 사실과 상황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상기와 같은 조건인 경우, 해당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수락하는 즉시 세금이 부과된다면 실질적이고 명시적인 수락 조건이 있어야 한다. 종업원이 모든 조건을 이해하는 한편, 종업원들의 수락절차가 끝날 때까지 고용주는 얼마나 많은 주식선택권이 발행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여일은 명시적인 수락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제안을 수락한 일자이다.

부여일은 주식선택권이 측정되는 일자를 결정하지만, 비용의 인식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주식선택권은 용역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만약 용역기간이 부여일(예: 제안일) 전에 시작이 된다면 X사는 주식기준보상의 부여일자의 공정가치로 추정되는 금액을 제안일부터 비용화하기 시작해야 한다. 종업원이 수락을 한 다음에는 그 날짜가 부여일이 되고 공정가치는 부여일에 결정될 것이다.

#### 4.2.2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거래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가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수량 할인 및 다른 할인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가치가 부여된 지분상품의 가치에 상응하지 않는 경우, 그 차이는 아마도 수량 할인 때문일 것이므로, 이 수량 할인을 차감한 공정가치로 기록하여야 한다.

### 예제 4.2.2

#### 수량 할인

A사가 자사의 주당 CU 100의 보통주 5,000주를 주고 1,000대의 컴퓨터를 구입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공급자는 같은 종류의 컴퓨터를 대당 CU700에 팔고 있다. A사의 주식은 하루에 몇 천주씩 거래가 되고 있어 공급자는 5,000주 정도는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다. CU 500,000 [5,000XCU100]과 CU 700,000 [1,000XCU700]의 차이는 수량 할인에 기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CU 500,000이 제공받은 컴퓨터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더 적절한 값이 될 것이다.

### 4.2.3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거래

주식기준보상거래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공정가치가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종업원이 3년 동안 근무용역을 제공해야 가득되는 주식 발행의 경우 부여일에 주식의 공정가치로 주식기준보상을 측정해야 한다. 부여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부여일의 주가 또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부여조건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가치를 재계산할 필요가 없다.

주식선택권에 대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옵션가격결정모형과 같은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IFRS 2.B4]

가장 흔히 쓰이는 3가지 모형은, 블랙숄즈모형, 이항모형 및 몬테카를로모형이다. 이러한 모형들은 Section 4.2.4와 이 책자의 Appendix 2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기업은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적용할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당수의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만기가 장기이고 가득일과 만기일 사이에 행사가능하며 종종 조기에 행사된다. 이러한 요소는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IFRS 2에 따르면, 조기 행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블랙숄즈모형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모형은 옵션이 만기 이전에 행사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고, 예상되는 조기행사의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기대주가 변동성 및 기타 가격결정요소가 옵션의 만기까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고려하지 못한다. [IFRS 2.B5]

각각의 약정에 대하여 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른 평가모형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되며, 더 나아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금액이 커짐에 따라 더 복잡한 모형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처럼, 같은 약정 하에서도 부여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비록 새로운 약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결정모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중요한 오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특정모형을 사용하여 일단 결정된 부여일의 공정가치는 조정되지 않는다.

IFRS 2 Appendix B는 부여받은 주식 및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소정의 약정 조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측정과 관련되어 기업이 결정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결정할 요소	회계적 결정 사항
가격모형	블랙숄츠, 이항, 몬테카를로 등
기대존속기간에 대한가정 / 종업원의 행사 행태	행사일이 가변적인 경우, 언제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예: 재무적으로 최적인 방식- 언제 주식선택권이 내가격 상태가 되는지, 예: 가득일- 주가가 특정 금액(barrier)을 언제 상회할지 또는 과거 행태에 기초하여).
현재 주가	주가는 부여일의 증가 또는 평균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기대주가변동성	이 금액을 계산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예: 역사적 경험에 근거, 거래되는 주식선택권의 내재된 주가변동성, 비교대상 기업의 주가변동성 또는 산업지수).
기대배당금	부여되는 예측기간 동안 미래 배당금을 예상해야 한다. 기업의 과거 경험치 또는 경쟁사의 경험치를 이용할 수 있지만 기업의 배당정책과 일관되어야 한다.
무위험이자율	이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표시되는 통화권의 정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기대존속기간이 비슷한 부여일 당시의 무이표국공채의 내재이자율을 말한다.

이러한 항목들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주가차액보상권 같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는 주식선택권의 가치산정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모형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미래주가상승액 및 기타 변수의 효과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와 다양한 형태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유사한 효과를 미친다.

#### 4.2.4 평가모형

Section 4.2.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장 흔하게 쓰이는 3가지 옵션가격결정모형은 블랙숄츠모형, 이항모형 및 몬테카를로모형이다.

주식선택권을 평가하는 블랙숄츠 모형은 1973년에 발표되었다. 이 블랙숄츠 모형은 주식선택권과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유사하게 반응하는 다른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항모형은 블랙숄츠모형을 단순히 설명하고 블랙숄츠모형의 제한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가득조건으로서 시장조건이 있는 경우 몬테카를로모형(또는 이와 유사한 수리적 접근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책자의 부록 2에 이 3개 모형을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 4.2.5 주식기준보상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소

부여된 대부분의 종업원 주식기준보상은 정상 거래시장에서 동일하게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IFRS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평가모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IFRS 2에서는 모든 옵션가격결정모형은 최소한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IFRS 2.B6]

- 옵션의 행사가격 (Section 4.2.5.1 참조)
- 기초자산인 주식의 현재가격 (Section 4.2.5.2 참조)
- 옵션의 존속기간 (Section 4.2.5.3 참조)
- 주식의 기대주가변동성 (Section 4.2.5.4 참조)
- 옵션의 존속기간에 예상되는 배당금 (Section 4.2.5.5 참조)
- 옵션의 존속기간에 적용될 무위험이자율 (Section 4.2.5.6 참조)

이러한 변수들은 평가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널리 인정되어 왔다. 따라서, 우선 이들 기본 요소를 검토해야 하며, 주식기준보상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은 Section 4.2.6에서 기술되어 있다.

상기 언급된 요소들 중 일부는 종업원의 행사 행태 등과 같이 합리적인 기대치가 일정범위의 형태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범위 내 각 추정치를 가중평균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한다. [IFRS 2.B12]

#### 4.2.5.1 행사가격

IFRS 2는 행사가격의 결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행사가격은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 4.2.5.2 현재주가

IFRS 2는 현재주가의 결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현재주가는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고, 부여일의 종가 또는 평균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어느 방법이 선택되는 지에 관계없이 기간별로 그리고 약정별로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한다.

#### 4.2.5.3 기대존속기간

종업원에게 부여된 전형적인 비상장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가득조건과 다양한 행태적 고려사항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과 기타사항들은 아래 Section 4.2.6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기간이 결정되는 방법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적절한 요소들을 포함한 이항격자의 설계 - 격자 산출물을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사일이 결정될 것이다.
- 아래 언급된 요소들, 종업원의 위험회피 및 행태를 고려하고, 블랙숄즈모형 등에 사용되는 기대존속기간을 추정한다.

주식선택권의 행사를 추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IFRS 2.B18]

- 가득기간 (주식선택권은 일반적으로 가득되기 전에는 행사될 수 없으므로)
- 주식선택권의 실제 존속기간에 대한 역사적 경험
- 기초주식의 가격. 종업원은 주가가 행사가격을 초과하여 특정수준에 도달했을 때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 기초주식의 기대주가변동성. 종업원은 주가변동성이 높을수록 조기에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 종업원의 조직 내 직급

IFRS 2에 따르면, 각각의 종업원 집단별로 부여한 주식선택권에 대해 동질적인 행사행태를 보일 수가 있으므로, 각각의 집단별로 기대존속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여받은 종업원 전체에 대한 기대존속기간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 정확할 것이다. 즉, CEO에게 부여된 주식선택권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공장직원에게 부여된 주식선택권과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CEO는 평균적인 종업원보다 최적의 행사시점에 대한 이해가 높고, 현금흐름에 대한 제약이 적다. IFRS 2에 따르면 블랙솔즈모형이 이용된다면 옵션의 기대존속기간을 모형에 포함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는 이항모형 또는 약정기간을 사용하는 유사한 옵션가격 결정모형의 경우 행사 행태를 모형에 포함할 수 있다.

#### 4.2.5.4 기대주가변동성

기대주가변동성은 일정한 기간에 주가가 등락하는 정도에 대한 추정치이다. [IFRS 2.B22] 거래되지 않는 종업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많은 우려사항은 옵션기간 동안의 기대주가변동성 추정에서 비롯된다.

변동성은 거래되는 주식선택권의 내재변동성에 기초하여 측정된다. 그러나, 거래되는 주식선택권이 매우 적고 그 기간이 대부분의 종업원 주식선택권의 기간보다 훨씬 짧다. 또한, 기간은 같은데 행사가격이 다른 주식선택권의 경우 내재변동성이 다르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고정 변동성을 가정하는 블랙솔즈모형에서는 고려될 수 없는 요소이다.

변동성은 평균수렴 성향이 있으므로 역사적 변동성이 미래 변동성을 일반적으로 나타내지 못한다고 가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 주식선택권에 대해 장기 평균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역사적 변동성이 사용된다. 내재변동성과 역사적 변동성을 함께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신규 상장되거나 비상장 기업에서는 역사적 변동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신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과거 주가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더라도 해당 주식의 거래행위가 관측될 수 있는 최장의 기간에 대해 역사적 주가변동성을 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존속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에 대해 유사한 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을 고려할 수 있다. [IFRS 2.B26]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하기 위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과거 주가정보가 없다. 그러나, 유사한 상장기업의 역사적 또는 내재 변동성을 포함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IFRS 2.B27~28]

기대주가변동성을 결정할 때에는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변동성의 추정은 우선 시장 조건하에서의 내재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재 변동성과 장기 평균 역사적 변동성을 비교해야 한다.

내재 변동성 및 역사적 변동성과 더불어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IFRS 2.B25]

- 기업의 주식이 공개적으로 거래된 기간
- 적절하고 주기적인 주가관측의 간격
- 미래의 기대주가변동성이 과거의 주가변동성과는 다를 것임을 나타내는 다른 요소들 (즉, 역사적 주가에 있어 비정상적 변동성)

#### 4.2.5.5 기대배당금

주식기준보상의 가치를 측정할 때 기대배당금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부여받는 상대방이 배당금 또는 배당등가물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IFRS 2.B31]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의 부여일과 행사일 사이에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면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기대배당금과 관련하여 어떤 조정도 필요하지 않다. [IFRS 2.B33] 만약 종업원이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갖지 않는다면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가득기간에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배당금의 현재가치를 차감한다. [IFRS 2.B34]

IFRS 2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배당금에 대한 가정은 공개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IFRS 2.B36] 그러므로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배당수익률을 가정해야 한다. 반대로, 기업이 미래에 배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적절한 동종집단의 평균배당수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옵션가격결정모형은 기대배당수익률을 가격결정요소로 한다. 그러나 기대배당수익률이 아닌 금액을 가격결정요소로 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금액을 사용한다면 과거의 배당금 증가형태를 고려한다. [IFRS 2.B35]

#### 4.2.5.6 무위험이자율

무위험이자율은 기대주가변동성 및 기대배당금보다 덜 직관적인 방식으로 주식선택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콜옵션의 가격은 상승한다. 이는 행사가격의 현재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무위험이자율은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표시되는 통화권 국가의 잔여만기가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기간과 같거나 비슷한 무이표국공채에 대해 부여일에 이용 가능한 내재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대체이자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IFRS 2.B37]

#### 4.2.6 주식기준보상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

표준화된 블랙숄츠모형에서 고려되지 않는 종업원 주식선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많다. 정형화되어 있는 블랙숄츠모형으로 직접 이러한 요소들을 통합하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IFRS 2에서는 블랙숄츠모형에 따른 계산시 입력변수의 조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점을 조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즉, 기대존속기간 대 약정기간) 이러한 조정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런 추가적인 가정에 대해 좀더 세밀하게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가정을 모두 포함한 모형으로부터의 효익이 이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 4.2.6.1 성과조건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포함한 성과조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절대가치 또는 비교대상그룹 혹은 지수에 대한 상대가치 형태로 표시되는 기업의 총주주이익 (시장 기반)
- 특정한 목표주가의 충족 (시장 기초)
- 매출액 수준 (비시장 기초)

이러한 조건들의 결과로,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에 대한 권리의 보유자들은 가득된 주식선택권 또는 주식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

Section 4.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IFRS 2에 따르면 시장성과조건은 부여일의 공정가치 결정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부여일에 가득기간을 추정하고 그 기간에 관련된 비용을 인식하여야 한다. 시장성과조건에 대해서는 가득기간을 사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

IFRS 2하에서 비시장성과조건은 부여일의 공정가치 결정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경우, 매 결산일의 누적 비용은 조건을 충족한 보상의 수에 각 보상의 공정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당해 기간에 비용화 되었을 금액과 같아야 한다. 즉, 각 결산일에 조정(true-up)이 필요하다.

#### 4.2.6.2 양도제한

흔히 가득기간 이후의 양도제한이 발행자의 관점에서 주식선택권의 가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식소유가 종업원의 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도제한은 종업원의 행사행태와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기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부 평가 전문가는 옵션가격결정시 양도제한에 대한 가정이 없기 때문에, 종업원 주식선택권의 양도제한은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여일에 종업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IFRS 2에서는 주식선택권의 양도제한을 고려하기 위해 주식선택권의 만기까지의 계약기간 대신에 행사까지의 예상 기간(기대존속기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전문가들은 의견은 평균 기대존속기간의 사용은 이론적으로 주식선택권의 양도제한을 고려하는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고, 주식선택권에 대한 평균 기대기간만으로는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기행사를 가져오는 종업원의 행태 요소가 더 동적인 옵션가격결정모형에 (이항모형과 같은) 명백하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평가 전문가들은 현재 가득기간 동안의 양도제한에 대한 할인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위에서 논의하였듯이 공정가치의 전제가 가상인 시장 참여자가 그러한 주식선택권에 지불하려는 금액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측정값은 주식선택권의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한도 내에서만 종업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가득기간 동안 종업원이 가지는 유일한 대안은 가득되거나 또는 가득되지 않는 것이다. - 이런 두 가지 대안은 IFRS 2에서 수정된 부여일 접근방법에 따라 고려되고 있다.

### 예제 4.2.6.2

####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계산할 때 가득기간 이후 양도제한의 영향

A사는 종업원을 위한 주식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의 주식은 상장되었고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아무런 가득조건이 없다. 그러므로, 주식은 부여일에 즉시 가득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부여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는 가득 이후 양도제한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의 판매는 5년이 지나기 전에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종업원은 부여일에 주식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5년 동안 시장으로부터의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주식은 양도규정이 만료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여된 주식의 배당금은 신탁한다.

가득 이후 양도제한규정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A는 5년 기간의 개시 시점에 은행 차입을 통해 상기 제도에서 부여하는 것과 같은 수량의 제한이 없는 주식을 시장에서 취득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선도거래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같은 방법에 의한 공정가치는 차입이자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자본시장 참여자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 수 있고 그 결과 공정가치는 자본시장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종업원들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을 기초로 계산한 공정가치보다 작을 수 있다.

부여일에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가득 이후 양도제한규정을 고려하기 위해 평가모형에서 어떤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IFRS 2.B3에 따라 부여한 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된 이후에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득 이후의 양도제한이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때에만 고려한다. 주식이 정상거래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된다면, 가득 이후 양도제한이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IFRS 2.Appendix A에서 공정가치는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상환되거나 부여된 지분상품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 같은 정의에 근거해서 A의 평가모형하에서는, 차입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해당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종업원의 자금조달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 4.2.6.3 행사제한규정

행사제한규정(즉, 종업원에 의한 주식의 행사 또는 양도에 대한 제한)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보유자의 행사 행태를 통해서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종업원들은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반면, 이런 제한 규정이 있을 때는 자신의 부의 많은 부분을 주식으로 보유하기 때문이다. 이는 종업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일반적으로(항상 그러한 것은 아님) 제한된 기간을 벗어나면 가능한 한 빨리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조기에 행사되는 주식선택권의 경우 고용주가 부여하는 가치가 주식선택권의 전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행사제한의 효과는 위에서 논의한 양도제한의 효과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행사제한규정은 주식선택권의 미래기대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정된 종업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 4.2.6.4 행사 행태에 대한 고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요소들이 종업원의 행사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주식선택권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 행사 행태는 중요한 요소로서 주식선택권의 가치산정 시 고려되어야 하며 금융시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전체 주택담보시장은 조기상환 행태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IFRS 2에 따르면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기간의 조정을 통하여 평가모형에 행태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선택권의 존속기간은 기업과 시장의 수익에 따라 달라지고 그 정도는 위험회피, 다양성 및 세무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근거로, 많은 이들이 이러한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활황시장에서 자신의 부가 증가하면,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비용이 감소하므로 주식선택권의 조기행사의 발생이 줄어들 것이다.

#### 4.2.6.5 장기적 특성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선택권의 장기적 특성은 중요하며 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블랙숄츠모형에서는 부여일자를 기준으로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기간 동안에 변하지 않는 일련의 가정을 사용하는 반면에 이항모형은 기대존속기간 동안에 예상 입력변수의 변동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가정을 사용할 수 있다. 전형적인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10년의 계약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정적인 모형의 사용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간에 따른 요소들의 변화는 주식선택권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주식선택권 기간 동안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모형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 할 수 있다.

평가전문가와의 연구와 토론 결과에 따르면, 종업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산정시, 역사적 증거 그리고/또는 현재의 상황에 상응하도록, 주식선택권의 기간 동안 이산시계열에 대한 변동성, 이자 및 배당률, 행사 형태 등을 중요성 기준에 입각하여 측정일자에 고려해야 한다. 입력변수의 변화를 통한 동적옵션가격결정모형의 적용은 더욱 어려운 사항이므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원가효익 분석이 고려되어야 한다.

#### 4.2.6.6 기업의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선택권의 기초자산인 주식을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하므로 희석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IFRS 2.B38]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선택권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희석화와 같은)이 중요할 수 있고, 시장은 일반적으로 부여일에 그 영향을 예측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는 개별 종업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장의 예측은 주식으로부터의 수익흐름이 전과 동일한지 또는 희석화나 현금납입에 의해 변경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경우 유통주식수와 비교해볼 때 발행되는 주식선택권 개수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주가에서 희석효과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는 부여한 주식선택권이 미래에 행사될 때 발생할 희석효과가 부여일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IFRS 2.B41]

### 4.2.7 종업원주식매입제도의 예

다음의 예제는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11)에 있는 것으로서 지분상품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 예제 4.2.7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11)]

#### 종업원주식매입제도

##### 배경정보

기업은 1,000명의 모든 종업원이 종업원주식매입제도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종업원은 기업의 제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2주 내에 결정해야 한다. 동 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은 각각 최대 100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매입가격은 제안일의 시장 추가보다 20% 싸게 책정되고, 매입가격은 제안의 수락시 바로 지불해야 한다. 매입된 모든 주식은 종업원을 위한 신탁에 맡겨야 하고 5년 동안 거래할 수 없다. 5년 동안 종업원의 제도에서 탈퇴할 수 없으므로, 예를 들어 종업원이 5년 내에 그만두게 되어도 주식은 5년이 지날 때까지 신탁된다. 5년 동안 지급되는 모든 배당금은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탁된다.

최종적으로 800명의 종업원이 제안을 수락했고, 각 종업원들은 평균 80주를 매입하였는 바, 종업원이 매입한 총주식은 64,000주이다. 매입일의 주식의 평균시장가격은 주당 CU 30이었으므로 종업원의 평균매입가격은 주당 CU 24 이다.

##### 규정의 적용

IFRS 2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과 거래에서의 거래금액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IFRS 2.11] 이 조건을 적용하면, 우선 종업원에게 부여한 지분상품의 종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종업원주식매입제도(ESPP 이하 "제도")의 형태를 띠더라도, 어떤 제도는 옵션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주식선택권제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제도는 'Lookback feature'<sup>3</sup>를 가지고 있다 즉, 종업원이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살수 있고, 할인된 매입가를 부여일 또는 매입일의 주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는, 제도에서 매입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종업원이 제도에 참여할지를 결정하는데 꽤 긴 시간을 주고 있다. 또 다른 옵션으로서의 특성을 예로 들면, 어떤 제도에서는 종업원이 정해진 기간 전에 그들의 참여를 취소할 수 있고 이 때 이전에 지불한 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제의 제도에는 옵션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할인은 매입일의 주가에 적용하고, 종업원은 제도에서 탈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다른 고려요인은 가득기간 이후의 양도제한규정이다. IFRS 2.B3에서는 만약 가득기간 이후에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가득 이후의 양도제한이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때에만 고려한다. 예를 들어, 주식이 정상거래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된다면, 가득 이후 양도제한이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예에서는 주식은 매입시 가득된다. 하지만 매입일로부터 5년 동안은 매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업은 5년 동안 가득기간 이후의 양도제한규정의 효과를 고려해야 하므로, 매입일에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

<sup>3</sup>역주: Lookback option - 만기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중에서 보유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옵션

래에서 결정될 양도제한 주식의 가치를 측정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 예에서는 제한된 주식의 공정가치를 CU28로 측정하였다. 이런 경우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주당 CU4이다 (제한된 주식의 공정가치 CU28 - 매입 가격 CU24). 64,000주가 매입되었기 때문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가치는 총 CU256,000이다.

이 예에서 가득기간은 없다. 그러므로 IFRS 2.14에 따라 회사는 비용 CU256,000을 즉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 제도와 관련된 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에서는 회계 정책은 적용의 효과가 중요하지 않을 때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IAS 8.8). 만약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재무제표에 근거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항목의 누락이나 오류는 중요하다. 중요성은 주변 상황이 고려된 누락 또는 오류의 크기나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항목의 크기나 특성, 또는 이 양자 모두는 중요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IAS 8.5] 그러므로, 이 예에서 회사는 CU256,000이 중요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의 예제에서 명시적으로 이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이다. 이는 다른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IFRS 2를 적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IAS 8에서 오류 관련 문단에서 “중요성”의 의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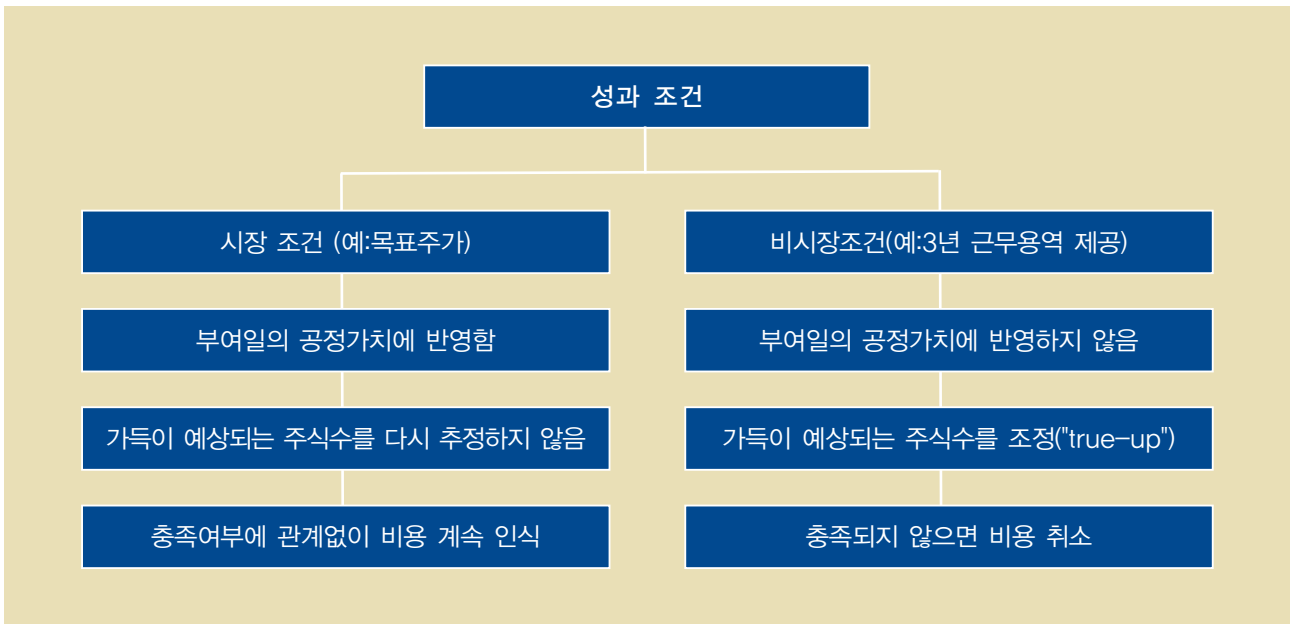
Section 4.6에서는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 4.3 가득조건의 회계처리

#### 4.3.1 기본 접근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지분상품을 특정한 가득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기간 계속 근무해야 하는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이익성장 또는 주가상승을 달성해야 하는 성과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IFRS 2.19]

아래 도면은 IFRS 2의 가득조건에 대해 요약한 것이다.



IFRS 2는 시장조건과 시장조건이 아닌 조건(일반적으로 “비시장조건”이란 용어를 사용)을 구분하고 있다. 시장조건은 IFRS 2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지분상품의 행사가격, 가득 또는 행사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으로 기업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에 관련된 조건을 말하며, 목표 주가의 달성, 주식선택권의 특정 목표내재가치 달성,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지수와 비교하여 산정된 기업의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에 기초한 특정 목표 달성 등을 포함한다. [IFRS 2 Appendix A]

가득(또는 행사가능성)여부를 좌우하는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한다. 따라서 시장조건이 부과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장조건이 달성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예: 특정용역제공기간에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이 충족되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IFRS 2.21]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 현재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대신에,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보상비용 측정의 대상이 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함으로써,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종업원이 일정한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하지 못하는 예와 같이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IFRS 2.19]

이 조건을 적용할 때에는 가득기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금액을,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인식한다. 만약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한다.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한다. [IFRS 2.20]

일반적으로 “수정된 부여일 접근방법”으로 불리는 이 접근법은 측정의 실용성과 US GAAP과의 일치라는 2가지 이유로 인해 IASB에서 적용되었다.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평가모형은 비시장조건을 고려하도록 변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할 경우, 복잡성이 증대되고 공정가치측정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시장조건은 IFRS 2.BC184에서 언급하였듯이 실무상 적용 어려움으로 인해 부여일의 공정가치 계산에 고려하지 않는다.

비록 가득조건 회계처리에 관해 IFRS와 US GAAP간의 완전한 정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비시장조건 ‘조정(true-up)’ 개념은 US GAAP과 비슷하다. “용역단위측정방법 (unit of service method)” 방법에 따라 공정가치 산정 시 모든 성과조건 및 용역제공조건을 고려하도록 요구했던 이전의 공개초안에 비해, 이 IFRS 2는 US GAAP에 훨씬 더 정합하다. (IFRS 2 Basis for Conclusions 참조)

이러한 조건의 실무상 적용방식은 다음 부분의 예제에 기술되어 있다.

#### 4.3.2 비시장가득조건

##### 4.3.3 가득기간을 좌우하는 비시장조건이 부과된 경우

##### 4.3.4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을 좌우하는 비시장성과조건이 부과된 경우

##### 4.3.5 행사가격을 좌우하는 비시장조건이 부과된 경우

##### 4.3.6 시장조건과 비시장조건

##### 4.3.7 가득기간이 시장조건에 따라 변하는 경우

##### 4.3.8 종업원이 아닌 자로부터의 제품과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주식발행이 우발적인 경우

##### 4.3.9 지분상품이 분할하여 가득되는 경우

##### 4.3.10 시장가득조건과 비시장가득조건의 구별

2007 개정 초안(draft amendment)에서는 Section 3.2.1에서 언급한 “비가득조건(non-vesting condition)”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용역제공 또는 성과가득조건이 아닌 조건을 의미한다.

비가득조건은 시장가득조건과 유사하게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규칙적으로 기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처럼, 비가득조건은 가득이전의 기간과 관련 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업은 이를 취소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기업이나 상대방이 모두 조건충족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면 (예: 상품지수에 근거한 조건) 회계처리에 영향이 없다.

비가득조건은 또한 “미완성 약정(non-complete provisions)”이나 양도제한규정처럼 가득기간 이후와도 관련이 있다.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회계처리에 영향이 없다.

### 4.3.2 비시장가득조건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1)는 비시장가득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예제 4.3.2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1)]

#### 비시장가득조건

##### 배경정보

기업은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CU15로 추정되었다.

기업은 종업원 중 20%가 부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 규정의 적용

(상황 1)

실제 결과가 추정과 일치한다면 회사가 가득기간에 인식할 보상비용은 다음과 같다.

연도	계산내역	당기보상비용	누적보상비용
		CU	CU
1	50,000주 x 80% x CU15 x 1/3	200,000	200,000
2	(50,000주 x 80% x CU15 x 2/3) - CU200,000	200,000	400,000
3	(50,000주 x 80% x CU15 x 3/3) - CU400,000	200,000	600,000

(상황 2)

1차년도 중에 20명이 퇴사하였고, 기업은 가득기간(3년)에 퇴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추정비율을 20%(100명)에서 15%(75명)로 변경하였다. 2차년도에 실제로 22명이 퇴사하였고, 기업은 가득기간(3년) 전체에 걸쳐 퇴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추정비율을 다시 12%(60명)로 변경하였다. 3차년도에는 실제로 15명이 퇴사하였다. 결국 3차년도말 현재 총 57명이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을 상실하였고 총 44,300개(443명x100개)의 주식선택권이 가득되었다.

연도	계산내역	당기보상비용	누적보상비용
		CU	CU
1	50,000주 x 85% x CU15 x 1/3	212,500	212,500
2	(50,000주 x 88% x CU15 x 2/3) - CU212,500	227,500	440,000
3	(44,300주 x CU15) - CU440,000	224,500	664,500

### 4.3.3 가득기간을 좌우하는 비시장조건이 부과된 경우

가득기간이 성과조건이 언제 충족되느냐에 따라 변하는 경우에는 주식선택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근무용역을 미래 기대가득기간에 걸쳐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기대가득기간은 부여일 현재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성과조건의 결과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IFRS 2.15] 성과조건이 시장조건인 경우에 기대가득기간의 추정치는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사용된 가정과 일관되어야 하며 후속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성과조건이 비시장조건인 경우에는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기대가득기간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기대가득기간의 추정치를 변경한다.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IG Example 2)는 가득기간을 좌우하는 비시장조건이 부과된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 예제 4.3.3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2)]

#### 기대가득기간을 좌우하는 비시장성과조건이 부과된 경우

##### 배경정보

기업은 1차년도에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주식 100주를 부여하고, 가득기간에 종업원이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한 주식은 회사의 연평균 이익성장률이 18%이상이면 1차년도 말에, 13% 이상이 되면 2차년도 말에, 그리고 연평균 이익성장률이 10% 이상이 되면 3차년도 말에 가득된다. 1차년도 초 현재 부여한 주식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CU30원이며 이는 주가와 동일하다. 부여일부터 3년간은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1차년도 말에 기업의 이익은 14% 증가하였으며 30명이 퇴사하였다. 기업은 2차년도에도 비슷한 비율로 이익이 성장하여 2차년도 말에 주식이 가득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2차년도에 30명이 추가로 퇴사하여 2차년도 말에는 총 440명이 주식을 가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차년도 말에 기업의 이익은 10% 증가하는데 그쳐 주식이 가득되지 못하였으며 28명이 퇴사하였다. 기업은 3차년도에 25명이 추가로 퇴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3차년도에는 이익이 최소한 6% 이상 성장하여 누적 연평균 이익성장률이 10%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3차년도 말에 실제로 23명이 퇴사하였고 기업의 이익은 8% 증가하여 누적 연평균 이익성장률이 10.67%에 달하였다.

##### 규정의 적용

연도	계산내역	당기보상비용	누적보상비용
		CU	CU
1	440 명 x 100주 x CU30 x 1/2	660,000	660,000
2	(417 명 x 100주 x CU30 x 2/3) - CU660,000	174,000	834,000
3	(419 명 x 100주 x CU30 x 3/3) - CU834,000	423,000	1,257,000

기업 주식의 최초공개(IPO)를 조건으로 하는 주식선택권의 부여는 비시장가득기간이 가변적인 또 다른 예로써, IPO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비용은 인식되지 않는다. 부여일에는 IPO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비용은 IPO의 실현가능성이 높게 된 날부터 실제로 IPO가 이루어진 날 사이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인식될 것이다.

### 4.3.4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을 좌우하는 비시장성과조건이 부과된 경우

종업원 각각에게 부여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가변적인 경우에도 비슷한 방법이 적용될 것이다.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3)에서 이러한 상황을 예시하고 있다.

#### 예제 4.3.4

(IFRS 2 적용지침서 (IG Example 3))

####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좌우하는 비시장성과조건이 부과된 경우

##### 배경정보

1차년도가 시작할 때, A사는 판매부 종업원 100명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주식선택권은 종업원이 기업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특정 제품의 판매수량이 최소한 연평균 5% 증가하는 경우 3차년도 말에 가득된다. 만약 판매수량이 연평균 5%이상 10% 미만으로 증가한다면 종업원들은 각각 100개의 주식선택권을 받을 것이다. 만약 판매수량이 매년 10%이상 15%미만으로 증가한다면 종업원들은 각각 200개의 주식선택권을 받을 것이다. 만약 판매수량이 매년 15% 이상 증가한다면 종업원들은 각각 300개의 주식선택권을 받을 것이다.

A사는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를 CU20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A사는 연평균 판매증가율이 10%이상 15%미만에 달하여, 3차년도 말에 용역제공요건을 충족한 종업원 1인당 200개의 주식선택권을 가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A사는 가중평균확률에 기초하여 3차년도 말 이전에 20%의 종업원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1차년도 말, 7명의 종업원이 퇴사하였고, A사는 3차년도 말까지 총 20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3년 동안 계속 근무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수는 80명이다. 제품판매는 12% 증가하였으며 A사는 이 증가비율이 남은 2년 동안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2차년도 말까지, 추가로 5명의 종업원이 퇴사하여 2년 동안 총 12명이 퇴사하였다. 이제 A사는 3차년도에 3명이 추가로 퇴사하여, 용역제공기간인 3년 동안 총 15명이 퇴사하고 85명의 종업원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제품판매는 18% 증가하여, 2년 동안 평균 15%를 초과하였다. A사는 이제 용역제공기간인 3년 동안 판매수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15%를 초과하여 3차년도 말까지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 1인당 300개의 주식선택권을 가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3차년도 말까지, 추가로 2명의 종업원이 퇴사하여, 용역제공기간인 3년 동안 총 14명이 퇴사하고 86명의 종업원이 남았다. 제품판매는 3년 동안 연평균 16% 증가함에 따라 결국 86명의 종업원 1인당 300개의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았다.

##### 규정의 적용

연도	계산내역	당기보상비용	누적보상비용
		CU	CU
1	80명×200개×CU 20 ×1/3	106,667	106,667
2	(85명×300개×CU 20×2/3) – CU 106,667	233,333	340,000
3	(86명×300개×CU 20×3/3) – CU 340,000	176,000	516,000



### 4.3.5 행사가격을 좌우하는 비시장조건이 부과된 경우

비시장가득조건에 따라 행사가격이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4)에서 이러한 상황을 예시하고 있다.

#### 예제 4.3.5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4))

#### 행사가격을 좌우하는 성과조건이 부과된 경우

##### 배경정보

기업은 1차년도에 최고경영자에게 주식선택권 10,0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CU 40이나, 3년 동안 기업의 연평균 이익성장률이 10% 이상이 되면 행사가격은 CU 30으로 인하된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행사가격을 CU 30으로 할 경우 CU 16, 행사가격을 CU 40으로 할 경우 CU 12으로 추정되었다.

1차년도에 기업의 이익은 12% 성장하였고, 기업은 이러한 성장률이 다음 2개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지정된 목표이익성장률이 달성되어 기대행사가격이 CU 30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2차년도에 기업의 이익은 13% 증가하였으며, 기업은 여전히 목표이익성장률이 달성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3차년도에 기업의 이익성장률은 3%에 그쳐 목표이익(연평균 10%이상)이 달성되지 못하였다. 다만, 최고경영자가 부여일 이후 3년간 근무함에 따라 용역제공조건은 충족되었다. 3차년도 말에 목표이익성장률이 달성되지 못하여 가득된 주식선택권 10,000개의 행사가격은 CU 40으로 확정되었다.

##### 규정의 적용

비시장성과조건이 달성여부가 행사가격을 좌우하므로 비시장성과조건이 효과(즉, 행사가격이 CU 40이 될 가능성과 CU 30이 될 가능성)는 부여일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에 기업은 각 경우 (행사가격이 CU 40이 되는 경우와 CU 30이 되는 경우)에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추정한 다음 추후 성과조건이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보상비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연도	계산내역	당기보상비용	누적보상비용
		CU	CU
1	10,000개×CU 16×1/3	53,333	53,333
2	(10,000개×CU 16×2/3) - CU 53,333	53,334	106,667
3	(10,000개×CU 12×3/3) - CU 106,667	13,333	120,000

### 4.3.6 시장조건과 비시장조건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5)는 시장조건(목표주가)과 비시장조건(용역제공조건)이 부여된 주식선택권에 대해 예시하고 있다.

#### 예제 4.3.6A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5))

#### 시장조건이 부과된 경우

##### 배경정보

기업은 1차년도 초에 최고경영자에게 주식선택권 10,0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3차년도 말에 회사의 주가가 CU 65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1차년도 초의 주가 CU 50), 최고경영자는 부여받은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차년도 말에 기업의 주가가 CU 65 이상이 되면 최고경영자는 주식선택권을 다음 7년 동안(즉, 10차년도 말까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기업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이항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모형 내에서 3차년도 말에 기업의 주가가 CU 65 이상이 될 가능성(즉, 주식선택권이 행사 가능하게 될 가능성)과 그렇지 못할 가능성(즉, 주식선택권이 상실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회사는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단위당 CU 24으로 추정하였다.

##### 규정의 적용

IFRS 2.21에 따르면 시장조건의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독조건(예: 특정기간 동안 근무를 지속하는 종업원으로부터의 용역제공)을 충족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보상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목표주가 달성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목표주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은 이미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였으므로, 기업이 최고경영자의 용역제공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또 실제 결과도 동일하다면 매 회계연도마다 인식할 보상비용은 다음과 같다.

연도	계산내역	당기보상비용	누적보상비용
		CU	CU
1	10,000개×CU 24×1/3	80,000	80,000
2	(10,000개×CU 24×2/3) - CU 80,000	80,000	160,000
3	(10,000개×CU 24) - CU 160,000	80,000	240,000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위 금액은 시장조건의 달성여부와는 무관하게 인식한다. 그러나, 만약 최고경영자가 2차년도(또는 3차년도) 중에 퇴사하였다면, 1차년도에 인식한 보상비용은 2차년도(또는 3차년도)에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조건과는 달리 용역제공조건은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에 용역제공조건은 IFRS 2.19~20에 따라 궁극적으로 가독될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보상비용을 조정함으로써 고려한다.

다음은 시장조건과 비시장조건이 함께 부여된 주식선택권에 대한 또 다른 사례이다.

**예제 4.3.6B**

**시장성과조건과 비시장성과조건이 함께 부과된 주식선택권**

**배경정보**

H사는 일부 종업원에게 매출이 CU 1,000백만에 도달하고 주가가 CU 50을 초과하여야 가득되는 총 100개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식선택권이 가득될 때 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주식선택권의 만기는 10년이다.

IFRS 2.21에 따르면, 시장성과조건이 부과된 주식선택권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장성과조건이 달성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이 충족되면 부여일의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를 인식하여야 한다. H사는 시장성과요소는 포함하고 비시장성과요소는 제외하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H사가 부여시점의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를 단위당 CU 20이라고 추정하였다면, 예상되는 용역제공기간 동안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인식되어야 한다.

- 만약 모든 주식선택권이 가득된다면, CU 2,000(100개× CU 20).
- 만약 주가가 CU 50을 초과해야 한다는 시장성과조건을 제외하고,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된다면, CU 2,000(100개× CU 20).
- 만약 매출이 CU 1,000백만을 초과해야 한다는 비시장성과조건을 제외하고,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된다면, 0.
- 만약 절반의 종업원이 용역제공기한 전에 퇴사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된다면, CU 1,000(50개× CU 20).

따라서 시장조건 및 비시장조건이 동시에 있는 경우, 시장조건 때문에 주식선택권이 가득되지 않더라도, 기업은 계속적으로 비시장조건이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추정하여야 한다.

2007 개정 초안은 상품 지수(commodity index)에 기초한 조건은 기업이나 상대방이 조건의 충족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비가득조건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가득조건은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데 고려된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시장가득조건과 마찬가지로 회계적 영향은 없다.

**4.3.7 가득기간이 시장조건에 따라 변하는 경우**

가득조건에 따라 가득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런 경우 IFRS 2.15에 따르면, 기업은 주식선택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근무용역을 미래 기대가득기간에 걸쳐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기대가득기간은 부여일 현재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성과조건의 결과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성과조건이 시장조건인 경우에는 기대가득기간의 추정치는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가정과 일관되어야 하며 후속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한다.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6)는 시장조건(주가상승)에 의해 가득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예제 4.3.7**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6))

**가득기간이 시장조건에 따라 변하는 경우**

**배경정보**

기업은 1차년도 초에 임원 10명에게 각각 만기 10년의 주식선택권 10,000개를 부여하였다.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당해 임원이 근무하는 동안 기업의 주가가 현재의 CU 50에서 CU 70으로 상승할 때 가득되며 즉시 행사가 가능하다.

기업은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이항모형에 따라 측정하며, 이항모형을 적용할 때 주식선택권의 만기(10년)까지 목표주가(CU 70)가 달성될 가능성과 그렇지 못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기업은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단위당 CU 25로 추정하였고 기대가득기간은 5년으로 추정하였다. 즉, 목표주가는 부여일부터 5년(기대치) 후 (5차년도 말)에 달성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기업은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10명의 임원 중 2명이 부여일부터 5년 이내에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부여일로부터 5년 후 시점(5차년도 말)에는 총 80,000개(8명× 10,000개)의 주식선택권이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5차년도 말까지 총 2명이 퇴사할 것이라는 추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5차년도 말까지 총 3명(3, 4, 5차년도에 각 1명씩)이 퇴사하였다. 목표주가는 실제로 6차년도에 달성되었으며, 6차년도에 목표 주가가 달성되기 전에 1명이 추가로 퇴사하였다.

**규정의 적용**

IFRS 2.15에 따르면 기업은 부여일에 추정된 기대가득기간에 걸쳐 보상비용을 인식하여야 하고 후속적으로 추정치(기대가득기간)를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보상비용을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보상비용은 궁극적으로 70,000개(임원 7명 × 10,000개)의 주식선택권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6차년도에 추가로 1명이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년의 기대가득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다. 기업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인식할 보상비용은 다음과 같다.

연도	계산내역	당기보상비용	누적보상비용
		CU	CU
1	80,000개×CU 25 ×1/5	400,000	400,000
2	(80,000개×CU 25 ×2/5) – CU 400,000	400,000	800,000
3	(80,000개×CU 25 ×3/5) – CU 800,000	400,000	1,200,000
4	(80,000개×CU 25 ×4/5) – CU 1,200,000	400,000	1,600,000
5	(70,000개×CU 25) – CU 1,600,000	150,000	1,750,000

### 4.3.8 종업원이 아닌 자로부터의 제품과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주식발행이 조건부인 경우

#### 예제 4.3.8

##### 종업원이 아닌 자로부터의 제품과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주식발행이 조건부인 경우

G사는 소송사건 시 G사를 도와줄 변호사와 계약을 맺었다. 만약, G사가 승소하면 변호사에게 G사의 주식을 100주 발행하고, G사가 패소하면 G사의 주식을 20주 발행할 것이다. G사는 용역제공기간 동안 변호사에게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했다. 각 회계연도 말에, G사는 사건의 승소여부뿐만 아니라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예상 소송종결기간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정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매 회계연도 말에 수정되어야 한다. 결국, 비용은 발행된 주식수에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측정지침에 따라, 제공받은 용역의 가치 또는 용역의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결정된) 주당 공정가치를 곱한 금액이다.

### 4.3.9 지분상품이 분할하여 가득되는 경우

#### 예제 4.3.9

##### 지분상품이 분할하여 가득되는 경우

A사는 종업원에게 향후 5년 동안 매년 말 200개의 주식선택권을 분할하여 가득되는 방식으로, 총 1,000개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다.

IFRS에 따르면, 기업은 각각 분할하여 부여되는 주식선택권을 개별적인 주식선택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분할 부여되는 각 주식선택권은 각기 다른 가득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가치도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득기간이 주식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4.3.10 시장가득조건과 비시장가득조건(지수)의 구분

가득조건은 대부분은 시장조건인지 비시장조건인지 바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 예제와 같이 이러한 구분이 항상 명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예제 4.3.10A

##### 시장가득조건과 비시장가득조건(지수)

A사는 A사의 주가상승율이 A사의 가장 중요한 10개 경쟁사들의 평균주가상승율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종업원에게 주식 선택권을 부여한다. 주가상승율은 배당이나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주가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IFRS 2에서의 시장조건의 한 형태로, 지분상품의 행사가격, 가득 또는 행사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으로 (중간 생략) 다른 기업들의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지수와 비교하며 산정된, 기업의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에 기초한 특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IFRS 2에 무엇이 지수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없다.

'지수' 라는 용어가 한 개 이상의 기업들의 비교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공표되거나 표준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지수의 존재여부에 대해 결정할 때 아래 기준들을 고려해야 한다.

- 부여시점의 공정가치가 지수를 참조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으며,
-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추가정보가 활성화된 시장에서 쉽게 획득가능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공정가치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 지수의 성과에 기업들의 성과가 미치는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일관되고 합리적인 계산식이 사용된다.

만약 이러한 기준이 충족된다면, A사가 부여한 조건이 시장조건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 예제 4.3.10B

##### 모집단내에서 주식의 순위

A사는 A사의 주가상승율이 100대 기업의 주가상승율 중 상위 25위 안에 들게 되면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주가상승율은 배당이나 다른 요소가 아닌 오로지 주가에 의해서만 산정된다.

이 가득조건은 시장조건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그렇다. 만약 위 4.3.10A 예제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수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수나 기업집단 내의 순위는 지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득조건은 시장가격에 의해 측정가능하고 일관된 계산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순위에 근거한 가득조건은 시장 조건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예제 4.3.10C

#### 시장조건으로서의 총주주이익(TSR: Total Shareholders' Return)

TSR은 기업의 주식에 대한 내부수익률로서, 이는 (a) 성과기간의 시작시점에서 주식을 매입하고 (b) 주식에서 받은 배당을 주식을 추가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c) 주식(배당주 포함)을 성과기간 말에 매각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다. 예를 들어, 만약 배당이 없고 1년 후 주식가격이 CU 100에서 CU 107로 오르면, TSR은 7%이다. TSR 성과조건은 통상적으로 기업의 TSR을 다른 기업들의 지수에 대한 TSR과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기업의 TSR이 상위 30%에 속한다면, 성과의 90%가 가득될 것이다.

TSR에 근거한 성과조건이 IFRS 2상에서 시장조건으로 분류되는가?

TSR의 계산은 기업의 주식가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배당의 영향도 포함한다. 부여시점의 공정가치 계산에서 비시장조건은 제외되지만, 시장조건은 포함된다. IFRS 2.BC184는 목표주가 같은 시장조건과 주식선택권 자체에 내재된 시장조건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구분을 지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IFRS 2는 시장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지분상품의 행사가격, 가득 또는 행사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으로, 기업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에 관련된 조건을 말하며, 목표주가의 달성, 주식선택권의 목표내재가치 달성 또는 다른 기업들의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지수와 비교하여 산정된, 기업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에 기초한 특정 목표의 달성 등이 있다.”

문단 BC 184는 또한 IFRS는 “SFAS 123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SFAS 123은 “가득 또는 행사가능성을 좌우하는 목표주가 또는 특정 목표내재가치”에 기초한 성과조건을 주식기준보상의 부여일의 공정가치 산정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FAS 123의 규정은 다른 모든 요소를 제외하고 목표주가와 관련된 조건만 부여시점의 공정가치 산정시 고려하도록 한정했다는 점에서 IFRS 2보다 더욱 구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 GAAP에서 TSR은 시장조건에 상응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대부분(전부는 아니라도)의 조건이 주가 변동에 근거하기 때문에, TSR에 근거한 가득조건은 측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정가능성으로 인해, TSR이 시장조건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지지를 받는다

## 4.4 재부여특성

어떤 주식선택권은 재부여특성을 가지고 있다. 재부여특성에 따르면 종업원이 기존에 부여받은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때 현금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주식으로 행사가격을 지불하는 경우 기업에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 추가적인 주식선택권(재부여주식선택권)을 부여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부여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재부여시점의 주가로 결정된다. [IFRS 2,BC188]

재부여특성은 IFRS 2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주식선택권 보유자가 기존에 부여받은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면서 행사가격 지불수단으로서 현금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주식선택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특성” [IFRS 2 Appendix A]

재부여주식선택권은 IFRS 2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기존에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된 주식에 대하여 새롭게 부여되는 주식선택권” [IFRS 2 Appendix A]

IFRS 2는 주식선택권이 재부여특성을 가지는 경우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재부여특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대신에 사후적으로 재부여주식선택권이 부여될 때 당해 재부여주식선택권을 새로운 주식선택권으로 회계처리한다. [IFRS 2,22]

IFRS 2,BC 189~192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재부여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더 적절할 것이다. ED(공개초안) 2에서는 “실행가능한” 경우에 이 회계처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감안하여, IASB는 모든 상황에서 상기에 언급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결정했다.

## 4.5 가득일 이후의 조정

IFRS 2에 따라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고 동일한 금액을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가득일이 지난 뒤에는 자본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보상비용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본내의 다른 구성요소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IFRS 2,23]

주식선택권이 '외가격(out of the money)' 상태이거나 종업원이 행사하지 않기로 하여, 가득되었으나 행사되지 않은 주식선택권에 대해서는 IFRS 2에 따라 인식한 비용을 취소하지 않는다.



## 4.6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IFRS 2에서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공정가치에 대한 예외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서, 이 때는 부여시점에 내재가치로 측정하고, 행사, 소멸 또는 기한 경과시까지 매 회계연도 말에 내재가치의 변동분을 조정한다.

내재가치는 IFRS 2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거래상대방이 청약할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 권리를 갖고 있거나 제공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의 공정가치와 거래상대방이 당해 주식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의 차이” [IFRS 2 Appendix A]

예를 들어, 주가가 CU 20이고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이 CU 15이면, 내재가치는 CU 5이다.

IASB가 IFRS2의 초안 작업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예외사항은 없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으므로 기준서 초안에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주식선택권을 위한 특별한 규정은 포함될 필요가 없었다. IASB는 주식선택권은 종업원 보상제도의 한 가지이므로 경영자는 이러한 보상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를 확인하기 위해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답변을 고려한 결과, 특히 비상장 기업과 관련하여, IASB는 이 문제를 다시 고려하게 되었다.

IASB는 부여시점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내재가치를 사용하는 대체 회계처리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IFRS 2.BC199]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의 성격에 대한 IFRS 2의 추가적인 지침은 없다. 비록 비상장 기업이 IFRS 2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여서 내재가치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여전히 매 회계연도 말에 주식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내재가치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부여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더 높게(그리고 변동성이 크게) 인식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꺼릴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지분상품은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지분상품의 내재가치로 측정된다. 이후 매 대차대조표일과 최종결제일에 내재가치를 재측정하고 내재가치의 변동액은 당기 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지분상품이 주식선택권이라면 당해 주식선택권이 행사, 상실(예: 종업원 퇴사) 또는 만기소멸(예: 주식선택권 계약기간 만료)되는 날을 최종결제일로 한다. [IFRS 2.24(a)]

이러한 방법이 사용될 때, 궁극적으로 가득되거나 행사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문단 14와 15(위의 Section 3.2.1 참조) -다만 문단 15(b)의 시장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제외-에 따라 가득기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는데, 인식금액은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만약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한다.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한다. 또한 가득일 이후에 주식선택권이 상실되거나 만기 소멸된다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인식한 금액을 환입한다. [IFRS 2.24(b)]

내재가치를 적용할 때 (Chapter 5 참조) 취소 및 중도청산을 포함하여 지분상품의 조건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인 문단 26~29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부여된 지분상품의 조건변경은 내재가치로 측정할 때 이미 고려되기 때문이다. [IFRS 2.25]

그러나, 내재가치를 적용한 지분상품이 중도 청산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중도청산이 가득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여된 지분상품이 즉시 가득 된 것으로 보아, 중도청산이 없을 경우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한다.

중도청산 시 지급액은 자기 지분상품의 취득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지급액이 중도청산일 현재 지분상품의 내재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IFRS 2.25]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10)에서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예제 4.6**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10))

**주식선택권을 내재가치로 측정하여 회계처리 하는 경우**

**배경정보**

기업은 1차년도 초에 종업원 5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주식선택권의 만기는 10년이다.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CU 60이고 부여일 현재 기업의 주가도 CU 60원이다.

부여일 현재 기업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차년도 말 현재 이미 3명이 퇴사하였고, 기업은 2차년도와 3차년도에도 추가로 7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80%(40명분)가 가득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2차년도에 실제로 2명이 퇴사하였고, 기업은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선택권의 비율을 86%로 추정하였다.

3차년도에 실제로 2명이 퇴사하였고, 3차 연도 말에 총 43,000개의 주식선택권이 가득되었다.

1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기업의 주가와 4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행사된 주식선택권은 모두 회계연도 말에 행사되었다.

연도	연도 말 주가	행사된 주식선택권 수량
1	63	-
2	65	-
3	75	-
4	88	6,000
5	100	8,000
6	90	5,000
7	96	9,000
8	105	8,000
9	108	5,000
10	115	2,000

규정의 적용

이 기준서의 문단 24에 따라 기업이 매 회계연도에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연도	계산내역	당기보상비용	누적보상비용
		CU	CU
1	$50,000\text{개} \times 80\% \times (\text{CU}63 - \text{CU}60) \times 1/3$	40,000	40,000
2	$50,000\text{개} \times 86\% \times (\text{CU}65 - \text{CU}60) \times 2/3 - \text{CU } 40,000$	103,333	143,333
3	$43,000\text{개} \times (\text{CU } 75 - \text{CU}60) - \text{CU } 143,333$	501,667	645,000
4	$37,000\text{개(미행사분)} \times (\text{CU}88 - \text{CU}75) + 6,000\text{개(행사분)} \times (\text{CU}88 - \text{CU}75)$	559,000	1,204,000
5	$29,000\text{개(미행사분)} \times (\text{CU}100 - \text{CU}88) + 8,000\text{개(행사분)} \times (\text{CU}100 - \text{CU}88)$	444,000	1,648,000
6	$24,000\text{개(미행사분)} \times (\text{CU}90 - \text{CU}100) + 5,000\text{개(행사분)} \times (\text{CU}90 - \text{CU}100)$	(290,000)	1,358,000
7	$15,000\text{개(미행사분)} \times (\text{CU}96 - \text{CU}90) + 9,000\text{개(행사분)} \times (\text{CU}96 - \text{CU}90)$	144,000	1,502,000
8	$7,000\text{개(미행사분)} \times (\text{CU}105 - \text{CU}96) + 8,000\text{개(행사분)} \times (\text{CU}105 - \text{CU}96)$	135,000	1,637,000
9	$2,000\text{개(미행사분)} \times (\text{CU}108 - \text{CU}105) + 5,000\text{개(행사분)} \times (\text{CU}108 - \text{CU}105)$	21,000	1,658,000
10	$2,000\text{개(행사분)} \times (\text{CU}115 - \text{CU}108)$	14,000	1,672,000

## 4.7 주가가 외화로 표시된 경우

### 예제 4.7

#### 주가가 외화로 표시된 경우

E사는 기능통화로 Currency Unit(CU)를 사용하고 있다. E사는 NYSE에 상장되어 있고 현재 주가는 US \$15이다. E사는 종업원에게 행사가격이 US \$15인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주식선택권은 주식으로만 결제될 것이다. 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주가가격으로 성립된 계약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가?

E사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은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회계처리가 필요한 내재파생상품은 아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해 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이나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거래는 E사의 CU로 표시하여야 하는 자본거래이다. 예를 들어, 만약 부여시점에 주식선택권 공정가치가 US \$1,500 이고 환율이 US \$1.5/CU1이라면, IFRS 2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는 비용은 총 CU 1,000(1,500/1.5)이고 주식당 CU 10이다. 이 금액은 환율이 변동하더라도 주식선택권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부채가 US \$로 표시된 외화부채이기 때문에 매 대차대조표일에 재측정해야 한다.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재파생상품을 식별하여 분리할 필요가 있다.

## 5. 조건변경(취소 및 중도청산 포함)

### 5.1 조건변경

이미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주가가 낮은 경우 이미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행사 가격을 낮추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높일 수 있다. 기준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전제로 조건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서도 이 규정은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술하고 있는 부여일 대신에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측정기준일로 한다. [IFRS 2.26]

제공받은 근무용역은 부여일에 지정된 비시장성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부여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한다. 이 규정은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 변경 여부 또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취소나 중도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 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의 효과를 추가로 인식한다. [IFRS 2.27]

따라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감소시키는 조건변경이 있다고 하여 미래기간에 인식될 비용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정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조건변경의 효과는 인식한다. 이 규정과 관련된 적용지침은 IFRS 2 Appendix B 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적용지침은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다.

#### 5.1.1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증가시키는 조건변경

예를 들어, 이미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낮추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증분공정가치는 조건변경 직전과 직후의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측정한다. 이 증분가치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의 측정치에 포함된다.

가득기간에 조건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 지분상품에 대해 부여일에 측정된 공정가치는 당초 가득기간의 잔여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조건변경일에 부여한 증분가치는 조건변경일부터 변경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날까지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의 측정치에 포함한다.

가득일 이후에 조건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분가치를 즉시 인식한다. 다만, 종업원이 변경된 지분상품에 대한 무조건부 권리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기간의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면 증분가치를 추가된 가득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IFRS 2.B43(a)]

IFRS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7)에서는 단순한 주식선택권 가격재결정에 적용해야 할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예시 5.1.1

IFRS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7)

후속적으로 가격이 재결정되는 주식선택권의 부여

배경정보

1차년도 초에 기업은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기업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CU15로 추정하였으며, 가중평균확률에 의하여 3년 동안 100명이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1차년도에 40명의 종업원이 퇴사를 하고 1차년도 말까지 기업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기업은 주식선택권의 가격을 재결정하였고 이는 3차년도 말에 가득된다. 기업은 추가적으로 70명이 2차년도와 3차년도에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1차년도 말 현재, 3년의 가득기간 중 퇴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종업원 수는 총 110명이다. 2차년도에 실제로 35명이 퇴사하였으며, 기업은 향후 1년 동안 추가로 30명이 더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므로, 3년 동안 총 퇴사인원을 총 105명으로 추정하였다. 3차년도에 실제로 28명이 퇴사하여 가득 기간 동안 실제 퇴사인원은 총 103명이 되었다. 근무를 계속한 397명에 대해서만 주식선택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기업은 가격 재결정일에 원래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격 재결정전)는 CU5이며, 가격이 재결정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CU8로 추정하였다.

규정의 적용

IFRS 2.27에 따라 기업은 주식기준보상거래 전체의 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여야 한다. 조건변경이 행사가격을 낮추는 등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증가시킨다면 (조건변경 직전과 직후에 측정된 가치를 비교하여), IFRS 2.B43(a)에 따라 조건변경일에 측정된 원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변경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증분공정가치(조건변경일자에 추정된, 조건변경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당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부여한 지분상품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식되어야 할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득기간에 조건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 지분상품에 대해 부여일에 측정된 공정가치는 당초 가득기간의 잔여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조건변경일에 부여한 증분가치는 조건변경일부터 변경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날까지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의 측정치에 포함한다.

당초 공정가치 CU15에 기초한 보상비용과 함께, 주당 CU3(CU8-CU5)의 증분공정가치는 잔여가득기간(2년)에 걸쳐 인식한다.

각 년도에 인식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연도	계산내역	당기보상비용	누적보상비용
		CU	CU
1	$(500-110명) \times 100개 \times CU15 \times 1/3$	195,000	195,000
2	$(500-105명) \times 100개 \times [(CU15 \times 2/3) + (CU3 \times 1/2)] - CU195,000$	259,250	454,250
3	$(500-103명) \times 100개 \times (CU15 + CU3) - CU454,250$	260,350	714,600

### 5.1.2 부여된 지분상품의 수를 증가시키는 조건변경

조건변경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위 Section 5.1.1과 같이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측정할 때 그 측정치에 추가로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변경일 현재 공정가치를 포함한다.

가득기간에 조건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 지분상품에 대해 부여일에 측정된 공정가치는 당초 가득기간의 잔여기간에 걸쳐 인식하며, 이에 추가하여 조건변경일에 부여한 추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조건변경일부터 추가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날까지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의 측정치에 포함한다. [IFRS 2.B42(b)]

### 5.1.3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가득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가득기간을 축소하거나, 또는 성과조건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와 같이 가득조건을 종업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다. 조건변경이 시장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Section 5.1.1에 기술된 바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모든 다른 경우에는 IFRS 2.19~21의 규정을 적용 시 변경된 가득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Section 4.3 참조). [IFRS 2.B43(c)]

### 5.1.4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가득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에 대한 조건변경이 주식기준 보상약정의 총 공정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은 용역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인식한다. 다만, 부여한 지분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한다면 Section 5.2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IFRS 2.B44]

이러한 상황은 실무적으로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종업원들이 이미 합의된 기타 종업원급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동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경영진은 외가격상태에 있는 주식선택권에 대한 비용을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업원들은 어차피 아무런 혜택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경영진의 제안을 수락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건변경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감소분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은 계속해서 부여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IFRS 2.B44(a)]

조건변경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의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일부가 취소된 것으로 회계처리 한다 (Section 5.2 참조). [IFRS 2.B44(b)]

가득기간을 늘리거나, 또는 성과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가득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IFRS 2.19~21의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가득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Section 4.3 참조). [IFRS 2.B44(c)]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8)은 이런 상황에 대해 예시하고 있다.

**예제 5.1.4**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8)

**후속적으로 가득조건이 변경된 주식선택권의 부여**

**배경정보**

기업은 1차년도 초에 판매부 종업원들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과 함께 3년 동안 특정제품에 대한 판매부의 판매수량이 50,000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CU15이다.

2차년도에 기업은 목표 판매수량을 100,000개로 증가시켰다. 3차 연도 말까지 기업은 55,000개를 판매하였으며, 주식선택권은 소멸되었다. 12명의 판매부원들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용역을 제공했다.

**규정의 적용**

IFRS 2.20에 따르면 기업은 시장성과조건이 아닌 경우 가득기간에 제공받은 용역의 금액을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인식한다. 만약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한다.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한다. IFRS 2.27에 따르면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은 근무용역은 부여일에 지정된 가득조건(부여일에 확정된 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부여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한다. 게다가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가득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IFRS 2.19~21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가득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성과조건에 대한 변경이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제공된 용역을 인식할 때 변경된 성과조건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원래 가득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제공된 용역을 인식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기업은 3년 동안 누적보상비용 CU180,000을 인식한다 (종업원 12명×1,000 개×CU15).

성과목표를 변경하는 대신에 제공받을 용역의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결과는 같다. 그러한 변경은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기업은 제공된 용역을 인식할 때 변경된 용역제공기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남아 있는 12명의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원래 가득기간인 3년 동안 인식한다.

**5.1.5 결제방식(주식결제형 및 현금결제형)과 관련된 조건변경**

IFRS 2.27은 단지 부여된 지분상품에 대한 조건의 변경만을 대상으로 한다. 당초 주식결제형으로 발행된 주식선택권에 현금결제 방식을 추가하는 이러한 경우에 포함된다. 결제조건과 관련된 변경에 대한 규정은 Chapter 7에서 설명하고 있다.



### 5.1.6 보유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건변경

신주의 발행 및 기업분할과 같은 자본변동의 경우, 주주의 권리를 보전할 의도로 주식선택권이나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한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1 무상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수는 두 배로 증가할 것이며, 주가는 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주식선택권 보유자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행사가격을 반으로 줄이거나 주식선택권의 수량을 두 배로 하는 등 주식선택권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은 IFRS 2에서 말하는 조건변경에 해당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조건변경의 분명한 의도가 주식선택권 보유자들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조건변경을 위해 사용된 방법이 원래 의도한 바를 달성한 것이 분명한 경우(예, 1:1 무상주 발행 시, 주식선택권의 수량을 두 배로 하거나, 행사가격을 반으로 줄이는 경우 등)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여 변경 직전과 직후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
- 이러한 조정이 계약상의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계약상 요구되지 않는 조건변경 있다고 하여 종업원들에게 부가적인 급여를 주는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정은 조건변경이 없을 경우 상실될 부분을 보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용된 방법이 종업원들에 부가적인 급여를 주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변경 직전과 직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 5.2 취소 및 중도청산

가득기간 동안 이미 부여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할 수 있으며, IFRS 2는 그러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식선택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이러한 규정이 아닌 가득조건에 관한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Section 4.3 참조).

부여한 지분상품이 취소 및 중도청산으로 인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을 경우의 잔여가득기간 동안 제 공받은 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즉시 인식한다. [IFRS 2.28(a)]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 지분상품의 취득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지급액이 부여한 지분상품의 취소 또는 중도청산일 현재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IFRS 2.28(b)]

2007 개정 초안에서는 IFRS 2.28(b)에 다음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이 부채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취소 또는 중도청산시점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야 한다. 부채 특성을 청산하기 위한 지급액은 부채의 감소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기업이 종업원에게 새 지분상품을 부여하고 그 부여일에 새로 부여한 지분상품이 취소한 지분상품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대체지분상품의 부여를 조건변경으로 보아 상기 Section 5.1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에 증분가치는 대체일 현재 대체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소한 지분상품의 순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취소한 지분상품의 순공정가치는 취소 직전의 공정가치에서 상기에서 설명한 자본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는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IFRS 2.28(c)]

기업이 새로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한 지분상품의 대체상품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분상품을 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IFRS는 기업이 대체상품의 식별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 예제 5.2A에서 보여지듯이, 새로운 주식선택권을 대체상품으로 보고 파악하는 것이 기업에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기존 주식선택권의 비용을 가속 인식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주식선택권이 명백하게 취소된 상품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 때는 대체상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새로운 주식선택권의 발행이 취소된 주식선택권의 대체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그러한 거래를 둘러싸고 있는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IFRS 2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새로운 주식선택권의 발행이 취소된 주식선택권의 대체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주식선택권은 취소된 주식선택권과 동일한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 새로운 주식선택권은 최초 부여일자(가격 재결정을 암시) 또는 취소일자(대체를 암시)에 결정된 취소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와 대체적으로 일치되는 공정가치로 발행되어야 한다.
- 주식선택권의 발행과 취소 거래가 동일한 계약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
- 새로운 주식선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당초 주식선택권이 취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 새로운 주식선택권의 발행이 없다면 당초 주식선택권의 취소가 상업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임).

만약 가득된 지분상품을 종업원으로부터 재매수한다면, 지급액은 자기 지분상품의 취득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지급액이 재매수일 현재의 재매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IFRS 2.29]

다음 예제는 상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예제 5.2A

##### 주식선택권의 대체

O사는 20X3년에 4년의 가득기간을 부과한 주식선택권을 발행하였다. 이 주식선택권은 행사가격이 주당 CU 10이고 부여시점의 공정가치는 CU 100,000이다. 20X5년 O사는 해당 주식선택권을 취소하고 주당 행사가격이 CU 3인 신규 주식선택권을 발행하였다. 부여시점의 신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CU 75,000이다. 만약 새로 발행된 주식선택권이 기존 주식선택권의 대체가 아니라면, 기존 공정가치 CU 100,000의 잔여 부분이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주식선택권들과 관련하여 총 CU 175,000이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O사가 새로 발행한 주식선택권을 취소된 주식선택권의 대체로 본다면, O사는 조건변경과 유사하게 회계처리한다. 그러므로 O사는 기존의 가득기간 동안 인식되지 않은 CU 100,000의 잔여 부분을 계속 비용으로 인식할 것이다. 더욱이 조건변경시점에서 이전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초과한 새로운 주식선택권의 증분공정가치를 남은 가득기간 동안 비용화할 것이다. 만약 이전 주식선택권의 취소일 현재 공정가치가 CU 20,000이라면, CU 55,000(75,000-20,000) 증분공정가치가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총 CU 155,000이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다음 예제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대체 주식선택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예제 5.2B

취소된 주식선택권을 대체하기 위하여 발행된 신규 주식선택권

S사는 상장기업인 P사의 종속회사로 역시 상장기업이다. P사는 S사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모든 유통주식을 공정가치에 매수하여 S사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거래의 일환으로, S사의 모든 주식선택권은 취소되었다. 그 대신, P사는 취소된 주식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S사의 종업원에게 P사의 주식선택권을 지급하였다. 새로 발행한 주식선택권의 부여시 공정가치는 대체된 주식선택권의 취소시점의 공정가치와 거의 비슷하다. 게다가 새로운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나 주식선택권 만기는 취소된 주식선택권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조정되었다.

비록 주식선택권이 S사와는 다른 위험을 가진 기업에서 발행된 것이지만, 의도는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거래는 지분상품의 대체로 보아 IFRS 2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한다.

2007년도 개정 초안에서는 거래상대방에 의한 취소도 기업에 의한 취소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정기적립저축제도(SAYE: Save As You Earn)의 가입자가 적립을 중단함으로써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는 권리가 상실되었을 때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부는 이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비시장가득조건이므로 가입자가 적립을 중단하고 제도를 탈퇴할 때 비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ASB는 대금 적립은 용역제공 조건이나 성과조건이 아니므로 비가득조건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제도에서의 탈퇴는 가입자에 의한 취소로 처리되어야 하는 바, IFRS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에 의한 취소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6. 측정 - 현금결제형 거래

### 6.1 기본 요건

Section 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FRS 2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로 소정의 가격(기업의 주식 또는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이전하는 부채를 부담하는 거래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거래의 가장 흔한 예는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상권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즉, 주식선택권을 행사하여 이를 즉시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수령할 금액과 동일한 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약정이 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IFRS 2.BC242는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은 지분상품의 발행이라기보다는 현금의 유출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성격의 부채에 관한 일반적인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문단은 이어서 이것은 복잡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고려해야 할 몇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그러한 부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IFRS 2.BC243~255참조).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또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대차대조표일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IFRS 2.30]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인식한다. 예를 들어, 부여된 즉시 가득 되는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받아 종업원이 용역제공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종업원에게서 이미 근무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제공받은 용역과 그 대가지급에 관한 부채를 즉시 인식한다. 만약 종업원이 일정한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해야만 주가차액보상권이 가득된다면 제공받은 용역과 그 대가지급에 관한 부채는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IFRS 2.32]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함에 따라 인식하는 부채는 부여일부터 부채의 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 대차대조표일과 최종결제일에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며 주가차액보상권의 부여조건, 그리고 측정기준일까지 종업원에게서 근무용역을 제공받은 정도를 고려한다.[IFRS 2.33]

보다 단순한 방법은 매기 말 주가차액보상권의 내재가치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누적비용은 항상 실제 현금지급액으로 정산된다고 가정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IASB는 내재가치접근법은 이 IFRS의 나머지 부분에서 적용하는 공정가치 측정기준과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12)에서 예시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제6.1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12)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배경정보

기업은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1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1차년도에 35명이 퇴사하였으며, 기업은 2차년도와 3차년도에도 추가로 60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차년도에는 실제로 40명이 퇴사하였고, 기업은 3차년도에 추가로 25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3차년도에 실제로 22명이 퇴사하였다. 3차년도 말에 150명이 주가차액보상권을 행사하였고, 4차년도 말에 140명이 주가차액보상권을 행사하였으며, 나머지 113명은 5차년도 말에 주가차액보상권을 행사하였다.

기업이 매 회계연도 말에 추정한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는 아래 표와 같다. 3차 연도 말에 계속 근무자는 부여받았던 주가차액보상권을 모두 가득하였다. 3차년도, 4차년도 및 5차년도 말에 행사일자의 주가차액보상권의 내재가치(현금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는 아래 표와 같다.

연도	공정가치	내재가치
1	CU 14.4	
2	CU 15.5	
3	CU 18.2	CU 15
4	CU 21.4	CU 20
5		CU 25

규정의 적용

연도	계산내역	당기보상비용	부채금액
		CU	CU
1	(500명-95명)×100개×CU14.4×1/3	194,400	194,400
2	(500명-100명)×100개×CU15.5×2/3-CU194,400	218,933	413,333
3	(500명-97명-150명)×100개×CU18.2-CU413,333 +150명×100개×CU15 소계	47,127 + 225,000 272,127	460,460
4	(253명-140명)×100개×CU21.4-CU460,460 +140명×100개×CU20 소계	(218,640) + 280,000 61,360	241,820
5	CU0-CU241,820 +113명×100개×CU25 소계	(241,820) + 282,500 40,680	-
합계		787,500	

부채의 재측정금액은 일회에 즉시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부채의 잔여가득기간에 걸쳐 인식된다.

## 6.2 가득조건의 회계처리

현금결제형 주식보상기준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득조건을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 IFRS2는 어떠한 규정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IFRS 2.30에 따르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IFRS 2.BC248 에서는 이러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한 예인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에 시간가치와 내재가치가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 시간가치란 “평가일과 결제일 사이의 미래의 주가상승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IFRS 2.BC250 은 시간가치가 배제된 부채의 공정가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IFRS 2에 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의 공정가치에 가득조건의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IFRS Implementation Guidance에서 발췌한 상기 예제 6.1은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예시하고 있다. 이 예제에서 종업원들은 주가차액보상권을 가득하기 위해 3년 동안 용역을 제공한다. 이 예제에서는 각 대차대조표일에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를 결정함에 있어 가득조건의 효과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가득되는 주가차액보상권의 최선의 추정치에 근거한 총부채금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비시장가득조건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부여일의 공정가치 산정시 고려하지 않으며, 조정(true-up)방법을 통해 반영된다. IFRS 2.19에서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서 가득조건을 배제하는 것은 진정한 공정가치측정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언급이 없다.

예제 6.1이 비시장가득조건인 한 유형(특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을 배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배제가 과연 목표수익의 달성 또는 목표주가의 달성에 근거한 가득조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공정가치는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상환되거나 부여된 지분상품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가치 측정시는 가득조건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가득조건을 반영한 공정가치는 예제 6.1에서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계산한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주의적 관점은 유일한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인 경우에는 중요성의 측면에서 거의 유사한 측정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목표주가 또는 목표매출의 달성에 근거한 가득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6.3 부채의 공시

아래의 예는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에서의 부채의 표시와 공시에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예제 6.3**  
주가차액보상권의 표시와 공시

C사는 12개의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을 3년 용역제공기간을 가득조건으로 특정 종업원들에게 부여하였다. 가득조건이 끝나는 시점에 C사는 1년 안에 3개의 주가차액보상권이 행사되고 나머지 9개는 1년이 지난 후에 행사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C사는 얼마의 주가차액보상권을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하는가?

IFRS 2에 따르면 주가차액보상과 관련한 부채의 장부가액을 대차대조표에 별도의 계정으로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재무제표에 관련 정보를 공시하면 된다. 주식기준보상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채는 IAS 32와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금융부채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주식기준보상부채가 다른 금융부채와 함께 대차대조표상에서 통합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서든 IAS 1.29~31에 따라 대차대조표상에서 별도 계정으로의 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AS 1.51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표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실 위의 C사의 경우 모든 주가차액보상권은 당장 내년이라도 행사될 수 있으므로, 유동부채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C사의 입장에서 유동성 배열법이 보다 적합한 재무제표 표시방법이라고 판단한다면 IAS 1.52에 따라 유동성 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 6.4 외화로 표시된 주가

이 문제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Section 4.7에서 검토하였다.

어떤 기업이 기능통화로 CU를 사용하고 있으나 주가는 US\$로 표시된다. 이 때 현금결제형 주식선택권의 경우 US\$로 표시된 부채로 간주하여 각 대차대조표 일에 재측정되어야 한다. 공정가치의 변동액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재측정이 이루어지므로, 내재파생상품을 식별하여 분리할 필요가 없다.

## 7.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7.1 기본 원칙

특정 상황에서 주식보상기준거래는 기업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지분상품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으로 현금지급이나 기업의 지분상품발행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그 주식기준보상거래나 그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요소는 기업이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만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러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만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IFRS 2.34]

IFRS 2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상기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각의 경우에 대해 상세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Section 7.2 참조)
-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Section 7.3 참조)

결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Section 7.4에서, 결제방식이 종업원 또는 기업의 통제 밖의 사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는 Section 7.5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Chapter에서 이하 “현금”이란 용어는 기타자산을 포함한다.

### 7.2 거래상대방의 선택권

만약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으로 현금지급이나 기업의 지분상품발행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은 아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을 부여받은 것과 동일하게 된다.

- 부채요소 - 거래상대방이 현금지급을 요구할 권리
- 지분요소 - 거래상대방이 현금대신 지분상품을 받을 수 있는 옵션

각각의 요소는 IAS 32에 따라 분리해서 회계처리한다.

다음 예제는 별도 약정을 통해 현금결제방식이 주어진 약정의 경우에 약정의 실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예제 7.2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A사는 종업원에게 3년 용역제공기간을 조건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고, 이는 가득기간이 종료시에 A사의 주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 주식선택권이 부여되는 시점에 동시에 체결된 별도의 약정에서, A사는 종업원에게 종업원의 선택에 따라 행사가 가능한 풋옵션 (A사로 하여금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와 주식선택권의 기초자산인 주식의 공정가치중 높은 금액으로 주식선택권을 현금결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였다. 이 풋옵션은 가득조건 충족시점부터 주식선택권의 만기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이 두 가지 계약은 서로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경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이 거래의 실질은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지분상품을 종업원에게 부여한 것이므로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었는지 아니면 다수의 계약으로 체결되었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A사는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계산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을 자본요소에 할당하여야 한다. 이 예제에서 자본으로 할당되어야 할 잔여부분은 0이므로 (Section 7.2.1 참조), 이 거래는 행사시까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유사하게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7.2.1 측정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 중 자본요소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 현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측정한다. [IFRS2.35]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포함하여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거래에서는 현금이나 지분상품에 대해 부여된 권리의 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 현재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IFRS 2.36] 이것을 IAS32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채택하는 기본 접근방법이다.

종업원과의 거래를 포함한 다른 거래에서는,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 또는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는 조건을 고려하여 측정일자에 측정된다. [IFRS 2.36] 이 경우 우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다음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지분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두 요소의 공정가치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IFRS 2.37]

IAS 32.32에 따르면 지분상품의 장부가액은 전체 복합금융상품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방식은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알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발행대가로 현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IFRS 2.BC260에 따르면 복합금융상품 자체의 공정가치를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IASB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부채요소(즉, 현금결제 선택권)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자본요소를 평가하여 두 요소를 합하여 복합금융상품을 측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일반적으로 각 결제방식의 공정가치가 같도록 설계될 것이다.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이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결제방식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주식선택권이나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는 0이며 따라서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와 같다. 반면에 만약 각 결제방식의 공정가치가 다르다면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는 0보다 크고, 따라서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보다 크다. [IFRS 2.37]

IFRS 2는 결제방식의 공정가치가 다를 경우 일반적으로 자본요소의 공정가치가 0보다는 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경우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보다 클 것이다.

IFRS 2.BC259는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대개 다음의 두 가지보다 클 것이라고 설명한다.

- 현금결제선택권의 개별 공정가치 - 주식 및 주식선택권이 현금결제선택권보다 가치가 높을 가능성 때문에
- 주식 및 주식선택권의 개별 공정가치 - 현금결제선택권이 주식 및 주식선택권보다 가치가 높을 가능성 때문에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이 실무적으로는 많은 상황에서 각 결제방식의 공정가치는 일치하며, 자본요소에 배분되는 금액은 0이 된다.

### 7.2.2 후속 회계처리

부여한 복합금융상품의 대가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은 각각의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부채요소에 대하여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지급에 관한 부채를 인식한다 (Chapter 6 참조). 자본요소가 있는 경우 자본요소에 대하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Chapter 4 참조). [IFRS2.38]

부채는 결제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한다. 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채를 발행하는 지분상품의 대가로 보아 자본으로 직접 대체한다. [IFRS2.39]

기업이 결제일에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지급액은 모두 부채의 상환액으로 보며, 이미 인식한 자본요소는 계속 자본으로 분류한다. 거래상대방은 현금을 받기로 선택함으로써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그러나 자본 내의 대체, 즉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IFRS 2.40]

현금결제선택권이 지분결제선택권보다 덜 유리하기 때문에 자본요소가 0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13)에서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예제 7.2.2**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13)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후속 회계처리**

배경정보

기업은 종업원에게 가상주식 1,000주(주식 1,000주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주식 1,200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동 권리에는 3년의 용역제공조건이 부과되어 있으며 종업원이 주식형 결제방식을 선택한 경우, 주식을 가득일 이후 3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부여일 현재 기업의 주가는 CU 50이고, 1차, 2차 및 3차년도 말의 주가는 각각 CU 52, CU 55 및 CU60이다. 기업은 3년간 배당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며, 가득일 이후의 양도제한규정의 효과를 고려하여 추정한 부여일 현재 지분상품선택권의 주당 공정가치는 CU 48이다.

3차년도 말에 종업원은 다음을 선택할 수 있다.

상황 1. 현금 결제

상황 2. 지분상품 결제

회계처리

지분상품선택권의 공정가치는 CU 57,600이다 (1,200 주 X CU 48). 현금선택권의 공정가치는 CU 50,000 (가상주식 1,000주 X CU 50)이다. 그러므로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는 CU 7,600 ( CU 57,600- CU 50,000)이고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연도	계산내역	보상비용	자 본	부 채
		CU	CU	CU
1	부채요소: (1,000주×CU 52×1/3)	17,333		17,333
	자본요소: (CU 7,600×1/3)	2,533	2,533	
2	부채요소: (1,000주×CU 55×2/3) - CU 17,333	19,333		19,333
	자본요소: (CU 7,600×1/3)	2,533	2,533	
3	부채요소: (1,000주×CU 60) - CU 36,666	23,334		23,334
	자본요소: (CU 7,600×1/3)	2,534	2,534	
3차년도 말	상황1: CU 60,000 현금지급			(60,000)
	상황1 합계	67,600	7,600	
	상황2: 1,200주 지급		60,000	(60,000)
	상황2 합계	67,600	67,600	

### 7.3 기업의 선택권

기업이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법률에 의해 주식발행이 금지되는 경우와 같이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하는 방식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결제정책이 확립되어 이미 공표된 경우, 또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를 요구할 때마다 기업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IFRS 2.41]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Chapter 6 참조). [IFRS 2.42]

만약에 그러한 의무가 없다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Chapter 4 참조). 다음 예제는 이러한 분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예제 7.3

####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종업원에게 부여한 옵션의 분류

A사는 상장기업이며, 종업원에게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다. A사의 주식은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주식선택권의 행사는 가득기간 동안 특정 성과조건의 달성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주식선택권 보유자는 A사가 이끄는 연결실체 내에서 계속 근무를 하거나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5년 동안 주식선택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와 동시에 종업원은 해당 주식을 즉시 매각하여야 하며, A사는 행사당일 시가로 우선적으로 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약 기업이 그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다면 종업원이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매각하는지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고 기업에 의한 어떠한 강제장치도 없다.

A사는 시장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시 필요한 수의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권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부여된 주식선택권은 새로운 약정사항으로서, 회사가 현금결제형 또는 주식결제형을 선택할 수 있는 약정이 과거에는 없었다. 따라서 주식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역사적인 패턴이 없다. 주식선택권의 부여는 주주들의 반대 없이 승인되었으며, 실제 행사일에 기업이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즉 종업원의 주식선택권 행사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을 기업이 우선적으로 매입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증권시장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주주명부폐쇄기간에는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면 종업원은 주식을 행사일에 즉시 매각해야 하고 A사는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실질적으로 주식을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A사로 하여금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IFRS 2.41~43의 규정이 적용된다.

IFRS 2.41은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으로 결제해야 할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기업이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것이 어떤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예를 들면 기업이 합법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는 상황), 또는 과거의 경험 또는 기업의 정책상 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를 요구할 때마다 현금결제에 응했다면 기업은 현금으로 결제할 현재의무가 있다.

IFRS 2.43에서는, 기업이 현금으로 결제할 현재의무가 없다면 IFRS 2.10~29에 따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사의 경영진은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요소와 정황을 파악한 뒤 현금을 지급할 어떤 법적인 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할 경우, 이 제도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활발한 시장이 있다.

- 법적인 관점에서 A사는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권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 현재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해당 부여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으며 기업도 행사일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
- 주식선택권의 행사가 주주명부폐쇄기간 동안 금지되기 때문에 동 기간 동안 매매에 대한 어떤 제한규정도 없다.
- 명문화된 정책이나 과거 경험으로 인한 의제 의무는 없다.

결제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IFRS 2.43]

- 기업이 현금으로 결제하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기 지분상품의 취득으로 보아 현금지급액을 자본에서 차감한다.
- 기업이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하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면 자본 내의 대체 즉,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기업이 결제방식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상황에 대한 IAS 32의 규정과 일관성이 없다. IAS 32는 이러한 유형의 계약에 대해 만약 파생상품 계약이라면 전체를 부채로, 파생상품 계약이 아니라면 복합금융상품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자본과 부채의 구분과 관련한 장기 프로젝트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러한 차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FRS 2.BC266]

기업이 결제일에 더 높은 공정가치를 가진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초과가치를 추가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초과가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할 때 발행하여야 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 또는 실제로 발행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현금결제방식을 선택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IFRS 2.43]

그러므로 기업이 결제일에 더 높은 공정가치를 가진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초과가치를 추가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렇게 인식한 비용이 계약 체결 당시 예정한 결제방식으로 실제 결제가 될 경우 인식하는 비용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현금지급액이 주식선택권의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일치하므로 현금결제선택권과 주식결제선택권이 동일한 공정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약정이 체결될 당시에 현금결제를 가정하고 있었다면 누적비용은 행사일 현재 실제 현금지급액(예: 내재가치)에 근거하여 인식되어야 한다. 만약 계약체결 당시 주식결제를 가정하고 있었다면 누적비용은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대체적으로 더 낮은 금액임)에 근거하여 인식되어야 한다.

기업이 계약체결 시 현금결제 의무가 없었다고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현금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부여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비용을 인식한 뒤 실제 지급한 현금금액으로 조정을 하지 않는다. IASB는 IFRS 2, BC26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비용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거래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결제 형태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기업에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기업이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없거나 현금결제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 기준서에는 상기 회계처리를 금지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 규정도 없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한 기업은 향후에는 현금으로 결제한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매우 제한된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 7.4 결제방식의 변경

IFRS 2는 지분상품이 부여된 당시의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소정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Chapter 5 참조) 또한 현금결제와 주식결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Section 7.1~7.3 참조). 그러나, IFRS 2는 결제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조건이 가변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 7.4.1 현금결제선택권의 추가

기업이 주식결제형 거래의 가득기간 동안 종업원 주식선택권에 현금결제선택권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거래는 변경일로부터 Section 7.2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복합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하며, 아래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9)에서 이러한 상황을 예시하고 있다.

#### 예제 7.4.1

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 (IG Example 9)

#### 현금결제선택권이 후속적으로 추가된 경우

##### 배경정보

1차 연도 초에 기업은 주당 공정가치가 CU33인 주식 10,000주를 3년 용역제공기간을 조건으로 최고경영자에게 부여하였다. 2차 연도 말 주가는 CU25로 하락하였고 동일자로 기업은 최고경영자가 주식 10,000주를 받거나 가득일에 10,000주의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결제선택권을 부여하였다. 가득일 당시 주가는 CU22였다.

##### 규정의 적용

IFRS 2.27에 따르면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 미충족으로 인해 가득이 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 또는 중도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 부여일 현재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부여일 현재의 주식의 공정가치를 3년에 걸쳐서 인식해야 한다.

더 나아가 2차 연도 말 시점의 현금결제선택권의 부여로 인해 기업은 현금결제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따라서 IFRS 2.30~33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에 따라, 조건변경일 현재 주식의 공정가치 및 제공받은 용역의 정도에 기초하여 현금결제를 위해 필요한 부채금액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매 보고일과 결제일 현재의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업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연도	계산내역	보상비용 CU	자 본 CU	부 채 CU
1	보상비용: 10,000주XCU33X1/3	110,000	110,000	
2	보상비용: 10,000주XCU 33X2/3 – CU 110,000	110,000	110,000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 10,000주XCU25X2/3		(166,667)	166,667
3	보상비용 10,000주XCU33X3/3 – CU 220,000	110,000	26,667 (*)	83,333 (*)
	기말 공정가치로 부채를 조정: (CU 166,667+CU 83,333) – (CU22X10,000)	(30,000)	–	(30,000)
	합계	300,000	80,000	220,000

(\*) 조건변경일자의 주식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3차년도의 부채금액을 인식하기 위해 금액을 부채와 자본에 할당.

## 7.4.2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의 변경

아래의 예제는 원래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된 경우이다.

### 예제 7.4.2

####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의 변경

20X1년 1월 1일 A사는 100개의 주식선택권을 단위당 CU15의 행사가격으로 종업원에게 부여하였는 바, 4년 동안 용역 제공조건이 부과되었으며 현금결제만 가능하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CU5로 추정되었다.

20X2년 12월 31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가 CU6로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A사는 모든 종업원이 가득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CU300[(CU6 X 100개 X 2/4년)의 누적비용을 계상하였다. A사는 20X3년 1월 1일에 현금결제 대신 A사의 지분상품으로만 결제되는 방식으로 조건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동 거래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하였다.

조건변경일자에 A사는 CU300에 달하는 부채를 제거하였으며, 계속해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회계처리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조건변경을 설명하고 있는 IFRS 2.27~29를 유추 적용하였다.

IFRS 2.27은 지분상품이 비시장조건의 미충족으로 인해 가득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부여일 현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용역제공기간에 걸쳐 보상비용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조건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공정가치는 잔존가득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조건변경일 현재의 부채의 공정가치가 부여일의 부채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한, 기업은 부채가 부여일부터 자본으로 인식되었을 경우에 조건변경일에 인식했어야 할 금액을 누적보상비용으로 인식한다.

조건변경일 현재 부채의 공정가치가 부여일의 부채의 공정가치(자본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금액)를 초과한 경우, 둘 중 큰 금액이 잔존가득기간 동안 인식해야 할 누적보상비용의 기준금액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는 자본으로 재분류되어야 하고 미인식한 보상비용은 잔존가득기간 동안 인식한다.

부여일 현재 부채의 공정가치(자본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금액)가 조건변경일 현재 부채의 공정가치를 초과한 경우, 둘 중 큰 금액이 가득기간 동안 인식해야 할 누적보상비용의 기준금액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는 자본으로 재분류한다. 또한 부채가 자본으로 회계처리 되었다면 현재까지 인식했어야 할 누적보상비용의 초과분은 즉시 보상비용 및 자본으로 인식된다. 미인식된 보상비용은 잔존가득기간 동안 인식된다.

## 7.5 결제방식 선택이 우발적인 경우

기업 또는 종업원의 선택여부에 관계없이 결제방식이 결정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다.

### 예제 7.5

#### 우발적으로 현금결제로 결정된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하였다. 행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의 소유권이 변경된다면, 기업은 주식기준보상약정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뿐만 아니라 잔여 주식선택권을 공정가치로 재매입하게 된다.

우선, 소유권의 변경을 기업의 통제하에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여 상기 약정을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의 변경은 이사회 그리고/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IFRS 2.3에 따르면, 기업에 제공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기업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거래상대방에게 주주가 기업의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것을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본다. 기업의 주주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투자자로서 행동하지 기업을 대신하여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면 그들은 기업의 입장이 아닌 투자자 개인으로서의 입장에서 결정을 내린다. 그러므로 기업공개나 다른 이유를 통해 소유권의 변경이 일어날 경우 이것은 투자자로서 행동하는 주주가 통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업의 통제범위 내에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상기 주식기준보상거래가 기업에게 결제방식의 선택권을 준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거래는 기업이나 종업원에게 현금결제선택권을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이 아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보통의 경우 주식결제가 되지만 기업의 통제범위 밖의 미래 사건이 발생시 현금결제가 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분류하는 방법이다.

IFRS 2에는 기업의 통제 밖에 있는 사건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현금결제가 가능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를 위한 특별한 지침은 없다. IAS 32 “금융상품: 표시”에서는 우발적인 현금결제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IASB는 IAS 32의 규정은 IFRS 2 (IFRS 2, BC106~BC110 및 IFRS 2, BC266 참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IFRS 2에서 IAS 32를 참조하여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분류할 수 없다.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우발부채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면, 기업의 통제범위 밖에 있는 사건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현금결제가 가능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는 우발사건의 발생가능성에 의해 좌우된다. 그 사건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고 다른 사항이 없다면 주식기준보상은 자본으로 분류되고 주식결제형으로 계상될 것이다. 그러나 발생가능성이 높다면 주식기준보상거래는 현금결제형으로 계상될 것이다. IAS 37.30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우발상황에 대한 판단은 최초 부여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판단해야 한다. 부여일 이후 우발상황에 대한 판단이 바뀐다면 주식결제형에서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해야 한다 (Section 7.4 참조).



## 8. 공시와 표시

IFRS 2.44~55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자세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이 책자의 부록 3에 기술하였으며, 중요한 부분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다. IFRS 에서 요구하는 주식정보가 IFRS 2의 문단 44, 46 및 50의 원칙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Section 8.1~3 참조). [IFRS 2.52]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 IFRS를 적용하는 경우에, 이 공시사항들은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모두에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 공시사항들(예: 제도의 특성, 사용된 옵션가격결정모형)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반복 기재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부 상세한 공시사항들(예: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에 관한 각종 수치정보 등)은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각각 공시되어야 한다.

### 8.1 주식기준보상의 성격과 범위

재무제표이용자가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성격과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IFRS 2.44]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IFRS 2.45]

- 아래와 같은 일반조건을 포함하여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각 유형에 대한 기술
  - 가득조건
  -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최장 만기
  - 결제방식(현금이나 주식)

IFRS 2.44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각각의 약정 별로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비슷한 여러 개의 주식기준보상약정을 통합하여 기술할 수 있다.

- 다음 각각에 대한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
  - 회계기간 초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
  - 회계기간에 부여한 주식선택권
  - 회계기간에 상실된 주식선택권
  - 회계기간에 행사된 주식선택권
  - 회계기간에 만기 소멸된 주식선택권

- 회계기간 말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
- 회계기간 말 현재 행사 가능한 주식선택권
- 회계기간에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행사일 현재 주가의 가중평균. 주식선택권이 회계기간에 규칙적으로 행사된 경우에는 회계기간의 가중평균주가를 주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 회계기간 말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범위와 가중평균잔여만기. 행사가격 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에는 주식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의 수와 발행시기, 그리고 행사대금으로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수준으로 범위를 세분할 필요가 있다.

## 8.2 공정가치 결정방법

재무제표이용자가 회계기간에 제공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식으로 기재한다.[IFRS 2.46]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 사항을 주식으로 기재한다. [IFRS 2.47]

- 회계기간에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의 가중평균 및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보
  - 사용된 옵션가격결정모형과 그 모형의 가격결정요소에 대한 정보. 가격결정요소에는 가중평균 주가, 행사가격, 기대주가변동성, 만기, 기대배당금, 무위험이자율 등이 포함되며, 기대되는 조기행사의 효과를 모형 안에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과 가정에 관한 정보도 함께 주식으로 기재한다.
  - 기대주가변동성의 결정방법에 관한 정보. 이와 관련하여 기대주가변동성이 과거의 주가변동성에 기초하고 있는 정도에 관한 설명도 주석에 포함한다.
  - 시장조건과 같은 주식선택권의 기타특성이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모형 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반영된 경우 그 방법에 관한 정보
- 회계기간에 부여한 기타지분상품(주식선택권이 아닌 지분상품)의 부여수량,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의 가중평균 및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보
  - 공정가치가 관측할 수 있는 시장주가에 기초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결정방법에 관한 정보
  - 기대배당금이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반영된 경우 그 방법에 관한 정보
  - 지분상품의 기타특성이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반영된 경우 그 방법에 관한 정보
- 회계기간에 조건이 변경된 주식기준보상약정에 관한 다음의 정보
  - 조건변경에 대한 설명

- 조건변경의 결과로 발생한 증분공정가치
- 증분공정가치 측정방법에 관한 정보

회계기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공정가치가 재화나 용역의 시장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IFRS 2.48]

IFRS 2.13를 적용할 때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과 이유에 대한 설명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Section 4.1 참조). [IFRS 2.49]

### 8.3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효과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IFRS 2.50]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IFRS 2.51]

-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해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총비용. 이 경우 총비용 중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에 대한 다음의 정보
  -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총장부금액
  - 거래상대방이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 가득된 주가차액보상권)를 대차대조표일 현재 가득한 경우 당해 부채의 대차대조표일 현재 총 내재가치

### 8.4 공시사항의 예시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공시사항의 예시가 IFRS IG32에 기술되어 있으며, [www.iasplus.com](http://www.iasplus.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Deloitte의 IFRS Model Financial Statements에도 기술되어 있다.

## 8.5 적립금의 변동

### 8.5.1 IFRS 2와 관련된 분개

IFRS 2에서 인식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기준서는 “자본의 상응되는 증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변금액이 자본의 별도 구성요소로 기록되어야 하는지 또는 이를 금지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한 IFRS에는 이 대변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IAS 19.BC48W는 “이익잉여금”을 명확히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이 용어가 총 누적손익에서 소유자에게 분배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결정할 때 개별 국가의 법률과 규제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률과 규제사항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대변분개를 자본금으로 간주해야 하고, 따라서 이익잉여금에 포함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을 것이다.

종업원주식소유제도(Employee Share Ownership Plan, 이하 ESOP) 신탁이 있는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예를 들면, 보유한 자기주식을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는 ESOP적립금계정에 IFRS 2의 대변분개를 회계처리하는 것이 선호될 수 있다. 그러나 부여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한 IFRS 2의 대변금액은 신탁에 있는 주식의 매입가격에서 행사가격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아래의 Section 8.5.2에 언급되어 있다.

### 8.5.2 ESOP신탁과 관련된 분개

ESOP신탁의 활용은 이 책자 Chapter 10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신탁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중인 경우에 연결재무제표상 적립금의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의 관점에서 이러한 주식은 “자기주식”이고 IAS 32.33에 따라 자본의 차감항목이다. IAS 32.34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총 금액은 대차대조표(예: 자본의 개별항목) 혹은 주식(예: 이익잉여금의 구성항목)에 표시된다.

감소액이 별도의 적립금으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예: 이익잉여금 잔액에서 차감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주식에 별도로 표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중요하다면 개별적인 적립금으로 보여주는 것이 보다 명확한 것이다.

다음의 예시는 별도의 ESOP적립금계정을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ESOP신탁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은 최초에 ESOP적립금 계정에 차기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매입가격이 CU 1,000인 경우:

차변) ESOP적립금	CU 1,000	
대변) 현금		CU 1,000

이 주식에 대해 주식선택권이 부여되고 행사가격이 CU 800이라면 행사시 다음 분개가 필요하다.

차변) 현금	CU 800	
차변) 이익잉여금	CU 200	
대변) ESOP적립금		CU 1,000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는 주식과 관련된 ESOP적립금 잔액을 유지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차이금액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은 차이를 반영하기에 가장 적절한 계정일 것이다.

그러나 Section 8.5.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립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IFRS 2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인식되는 만큼 자본항목에 대기되며 이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이를 별도의 적립금계정에 대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주식선택권을 결제하는 경우 상기 적립금을 ESOP적립금에 대기하는 회계처리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러한 회계처리는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대변 금액은 부여일의 공정가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신탁의 주식 매입가격과 주식선택권 행사가격의 차이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IFRS 2의 대변분개는 ESOP적립금에 대기하는 회계처리로 인해 매년 적립금 금액이 증가하고 이는 영원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IFRS 2에서 발생하는 대변분개는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ESOP 신탁을 통한 자기주식의 매입은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호될 것이다.

## 9. IFRS의 최초채택

IFRS 1 “IFRS 최초채택”은 IFRS 2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 선택적 면제조항을 제공한다. 이러한 면제조항이 사용될 때의 IFRS 1의 규정은, 기업의 이전에 부여된 특정 주식선택권에 IFRS 2를 적용하지 않아도(또는 적용이 허용) 된다는 점에서 IFRS 2 그 자체의 경과규정과 매우 유사하다. IFRS 1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9.1 지분상품

#### 9.1.1 소급적용에 대한 제한

최초채택 기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IFRS 2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의무적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IFRS 1.25B]

- 2002년 11월 7일 이전에 부여된 지분상품
- 2002년 11월 7일 후에 부여되고, IFRS 전환일과 2005년 1월 1일 중 늦은 날짜 전에 가득된 지분상품

IFRS 최초채택 기업의 전환일이 거의 예외 없이 2005년 1월 1일 이후일 것이므로 2005년 1월 1일을 언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조항의 실질적인 효과는 전환일 전에 부여된 지분상품을 무시해도 된다는 점이다. 최초 IFRS 보고기간과 비교기간에 이런 지분상품에 대해 인식한 비용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논리적이다. 2002년 11월 7일 이전에 부여된 지분상품은 전환일에 아직 가득되지 않더라도 무시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최초채택 기업이 그러한 지분증권에 IFRS 2를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IFRS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측정일에 결정된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공개적으로 공시해 왔던 경우에 한해 이러한 지분증권에 대해서도 IFRS 2를 적용할 수 있다. [IFRS 1.25B]

기업들이 이전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공개적으로 공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IFRS 2를 완전히 소급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적으로 공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 기준서는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IASB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연도의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공시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IFRS 2.IG8에서는 SFAS 123에 따라 미국에서 요구되는 주식공시사항을 예로 들고 있다. 비록 IFRS 2의 Basis for Conclusion에서는 완전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사후적 이익이 개입되지 않은 이전 일자의 평가정보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공정가치의 공개적인 공시가 다른 방법에 의해 충족될 수 있을지라도 (예를 들면, 최초 IFRS 재무제표 이전의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재무제표에서도 동시에 공시를 하는 것만이 이 기준서의 의도를 충족하는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IFRS 2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지분상품(예: 2002년 11월 7일 이전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경우에도 최초도입기업은 IFRS 2.44~45에 의한 정보를 공시해야만 한다 (Chapter 8 참조). [IFRS 1.25B]

### 9.1.2 공정가치 측정에서의 사후적 이익 사용

다음의 예제는 IFRS 2가 적용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사후적 이익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 예제 9.1.2

##### 공정가치 측정에서의 사후적 이익 사용

R사는 IFRS 최초채택 기업으로서, 2004년 1월 1일이 전환일이고 2005년 12월 31일이 보고일이다. R사는 2006년 6월 30일에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을 2003년 6월 30일에 발행하였다. 이 거래는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되었다. IFRS 1에 따라 R사는 2003년 6월 주식선택권의 부여에 IFRS 2를 적용하도록 요구된다. R사는 이전의 GAAP에 따라, IFRS 2에서 요구하는 2003년 6월 30일자의 공정가치를 공시하지 않았으므로 기대변동성, 기대존속기간, 기대배당금 등을 결정하지 않았다.

2003년 6월 30일의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을 위해 2003년 6월 30일(부여일)에 이용 가능한 정보 또는 2004년 1월 1일(전환일)에 이용 가능한 정보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IFRS 2 Appendix B에서는 가격결정모형의 입력변수는 과거 경험치와 미래 기대값에 기초한 미래에 대한 기대치와 연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시에는 과거의 경험치가 미래에 대한 예측지표로 합리적으로 활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과거의 데이터를 단순히 사용해서는 안 된다.

IFRS 1.33에서는 IAS 10과 일치하기 위해 과거 회계기준에서는 요구되지 않았던 추정치는 IFRS 전환일에 존재하는 조건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R사는 2004년 1월 1일에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기대변동성, 기대배당금, 기대존속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모형에 대한 일부 입력변수는 전적으로 계약 또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며, 이런 경우에는 역사적 정보가 사용된다. 주가, 행사 가격 및 무위험이자율은 부여일(2003년 6월 30일)에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비용은 가득기간 동안에 인식되어야 한다. 전환일 이전의 가득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IFRS의 전환일에 자본으로 직접 인식된다.

### 9.1.3 조건변경

최초채택 기업이 IFRS 2가 적용되지 않는 지분상품의 조건을 변경한 경우, 조건변경이 IFRS 전환일과 2005년 1월 1일 중 늦은 날짜 이전에 발생했다면 IFRS 2.26~29는 적용될 필요가 없다. [IFRS 1.25B]

## 9.2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

최초채택기업은 다음의 주식기준보상거래로부터의 부채에 관해 IFRS 2 적용이 권장되지만 의무적으로 적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IFRS 전환일 전에 결제된 지분상품
- 2005년 1월 1일 전에 결제된 지분상품

IFRS 2의 조항이 적용되는 부채에 대해서, 최초채택기업은 2002년 11월 7일 이전과 관련된 비교정보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IFRC 1.25C]

다음의 예제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예제 9.2

#### 최초채택 부채의 측정

Q사는 IFRS 최초채택기업으로서 2004년 1월 1일이 전환일이고, 2005년 12월 31일이 보고일이다. Q사는 2006년 11월 30일에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을 2003년 11월 30일에 발행하였다. 주식선택권은 현금결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분류되었다. IFRS 1에 따라 Q사는 부채가 2005년 1월 1일 전에 결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3년 11월에 부여한 주식선택권에 IFRS 2를 적용하도록 요구된다.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Q사는 IFRS 2에 부합되는 2003년 11월 30일 현재 공정가치를 추정 또는 공시하지 않았으며,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2003년 12월 31일 현재의 행사가격과 주가의 차이로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였다.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현재의 행사가격과 주가의 차이로 인식한 금액을 2004년 1월 1일자의 IFRS 2 하에서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의 근사치로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할 수 없다. 부채는 주식선택권이 부여된 조건과 종업원이 제공한 용역을 고려하여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전환일(2004년 1월 1일)과 매 결산일에 측정한다. IFRS 2.BC248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는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시간가치란 “평가일과 결제일 사이의 미래의 주가상승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IFRS 2.BC250은 시간가치가 배제된 부채의 공정가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 10. 종업원주식소유신탁

종업원을 위하여 후원기업이 설립한 신탁은 종업원의 주식보유를 용이하게 하고 보상제도하에서 종업원에게 주식을 분배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개별 신탁의 구체적인 구조는 설립이유와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하다.

IASB는 SIC 12 "특수목적회사 연결"의 지분보상제도에 대한 적용범위 배제조항이 IFRS 2가 시행되면서 제거될 수 있는지에 관해 IFRIC의 의견을 구했다. IFRS 2가 시행되기 전에, IAS 19에서 그러한 보상에 대한 인식과 측정기준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IAS 1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었다. 또한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도록 요구한 규정이 종업원 주식선택권제도, 종업원 주식매입제도 및 다른 모든 주식기준보상약정에 적용되도록 IFRS 2를 통해 IAS 32를 개정하였다.

IFRIC은 IFRS 2와 IAS 32의 일관성을 위해, SIC 12의 적용범위를 개정함으로써 지분보상제도를 위한 적용범위 배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2004년 11월에 승인 및 공표되었다. 개정내용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즉, IFRS 2와 동일). 개정안 공표시 IASB의 보도자료에서, 개정의 결과로 종업원보상신탁 (또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한 실체)을 통제하는 기업은 당해 신탁을 연결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지분보상제도에 대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SIC 12 개정안을 검토할 때, IFRIC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여러 이슈를 파악하였는 바, 약정이 연결에 의하여 회계처리되어야 하는지 또는 후원기업의 별도재무재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이슈는 IFRIC이 현재 추진중인 안건이 아니며, IFRIC으로부터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어떤 상황에서는 연결재무재표에서만 신탁자산과 부채를 회계처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아래 논의 참조)

종업원을 위하여 후원기업이 설립한 신탁은 종업원의 주식보유를 용이하게 하고 보상제도하에서 종업원에게 주식을 분배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후원기업은 신탁에 대한 통제를 가지고 있다면 신탁은 연결하여야 한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및 SIC 12는 기업이 ESOP신탁에 대한 통제 보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과 함께, 다음의 지표들은 신탁에 대한 통제의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요소만으로 통제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모든 적절한 사실과 상황을 완전히 분석하여야 한다.

통제의 판단지표:

- 신탁이 후원기업의 설립목적 - 후원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보상 -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 후원기업이 신탁의 수탁자를 지명한다.
- 수탁자가 통상적으로 후원기업의 의견에 따라 행동한다. 예: 신탁자금의 배분방법에 관한 의향서
- 신탁의 재산은 부도 등의 경우에 후원기업 또는 그 채권자(예: 부도 발생의 경우)에게 되돌려 진다.
- 신탁의 부채에 대해 후원기업이 지급보증을 한다.
- 주식이 가득되지 않는 경우 신탁의 자산이 기업에 되돌려 진다.

- 후원기업이 신탁에 대한 미래 자금제공 수준에 대해 결정한다.
- 후원기업이 관행적으로 신탁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다.(권리 행사를 원하는 종업원에게 지불하기 위해 신탁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는 대신에).
- 후원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주식배분을 결정한다.
- 후원기업이 지급보증(또는 유동성위험으로부터 신탁을 보호하는 다른 계약)을 제공한다.
- 신탁의 존속기간 종료시에, 신탁에 있는 모든 잉여자산은 기업에 지급되고 발생한 부족액은 기업(또는 종속기업)의 손실로 귀속된다.
- 만약 신탁이 당해 연도에 이익을 기록한다면, 이러한 이익이 후원기업에 귀속된다.
- 후원기업이 주식의 최소가치를 보장한다.

후원기업이 통제하는 경우, 자산, 부채 및 자기주식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

- 신탁에 있는 기업 자신의 주식의 매입 또는 처분을 통해 지급 또는 수령한 대가는 자본 변동내역 조정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된다.
- 기업 자신의 주식의 매입, 처분, 발행 및 취소에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은 조달한 자금을 신탁에 지급할 때가 아니라 발생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배당수익은 세전순이익 산정시 제외되어야 하고 지급하고 제시한 총 배당금으로부터 차감되어야 한다.

후원기업이 처한 환경에서 신탁의 중요성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후원기업의 재무제표의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어야 한다.

## 11. 세금

일부 국가에서는,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의 행사시 획득하는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세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므로 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IAS 37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이 이러한 부채의 인식과 측정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지침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세금이 종업원의 이득(예: 행사일의 내재가치)에 기초하여 결정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하기 전에 기업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가?
-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부채는 매 대차대조표일에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사항은 IFRS 2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질문사항과 유사하다. 따라서 그러한 세금은 매 대차대조표일에 부채로 인식되어야 한다.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건”은 종업원에 의한 주식선택권의 행사라기 보다는 기업에 의한 주식선택권의 부여이므로 이러한 방법은 IAS 37 과 IFRS 2의 요건과 일치한다. 비록 이 부채가 IFRS 2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식선택권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여 결정된 공정가치가 아닌 대차대조표일의 내재가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 가능하지만, 이 부채는 IFRS 2에서 요구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IFRS 2의 방법에 따라 공정가치로 부채를 측정하는 것이 선호되는 방법이다. IFRS하에서 직원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IAS 19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기준서에 따르면 동 비용은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인식된다. 그러므로 IFRIC의 다른 해석과 상충되지 않는 한 부채는 가득기간에 걸쳐 증액된다.

## 12. 연결실체 내에 있는 기업의 회계처리

Section 2.2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종속기업의 종업원이 지배기업의 주식이나, 흔하지는 않지만 연결실체내의 다른 기업의 주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 IFRS 2는 종업원의 용역에 대한 혜택을 받는 기업이 관련된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비록 지분상품이 연결실체내의 다른 기업에 의해서 발행되더라도 동일하다. 그러나 연결실체내의 개별 기업에 IFRS 2를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IFRIC 11 “연결실체 및 자기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은 Section 12.1과 12.2에서 설명하고 있다. 비록 IFRIC 11이 종업원과의 거래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 해석은 재화와 용역의 다른 공급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거래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IFRIC 11.6]

IFRIC 11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IFRIC 11을 조기적용한다면,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IFRIC 11.12] IFRIC 11은 IFRS 2의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IAS 8에 따라 반드시 소급적용 되어야 한다. [IFRIC 11.13]

### 12.1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을 수반하는 주식기준보상약정

IFRIC 11이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이슈는 IFRS 2하에서 다음의 거래들이 주식결제형인지 또는 현금결제형인지에 관한 것이다. [IFRIC 11.1]

- 기업이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예: 주식선택권)를 종업원에게 부여하고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약 또는 필요에 의해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지분상품(예: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또는 이 방식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 기업의 종업원이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예: 주식선택권)를 기업 또는 기업의 주주로부터 부여받고, 기업의 주주가 필요한 주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을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는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주식결제형으로 처리된다. IFRIC 11은 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약 또는 필요에 의해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지분상품(예: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을 선택하든지 또는 이 방식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확인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또한 다음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IFRIC 11.7]

-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를 기업이 부여했는지 또는 기업의 주주가 부여했는지의 여부
- 주식기준보상약정을 기업이 결제하는지 또는 기업의 주주가 결제하는지의 여부

비록 기업이 거래의 일부분으로서 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거래를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IFRIC 11의 확고한 입장이다.

IFRIC 11.BC6에 따르면,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금융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IAS 32의 규정이 명확하므로 IFRIC 11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 12.2 지배기업의 지분상품을 수반하는 주식기준보상약정

IFRIC 11의 두 번째 이슈는 연결실체내의 둘 이상의 기업이 연관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이다. 예를 들면, 종속기업의 종업원은 종속기업 근무대가로 지배기업의 지분상품을 부여받을 수 있다. IFRS 2.3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은 명확히 IFRS 2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를 연결실체 내에 있는 각 기업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IFRIC 11.2]

IFRIC 11은 아래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직접 자신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므로, 지배기업(종속기업이 아님)이 필요한 지분상품을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Section 12.2.1 참조)
- 종속기업이 자신의 종업원에게 지배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므로, 종속기업(지배기업이 아님)이 필요한 지분상품을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Section 12.2.2 참조) [IFRIC11.3]

IFRIC 11은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기업이 종속기업인지 지배기업인지 용이하게 판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따라서 각 상황에 따라 다른 회계처리를 제시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연결실체내 어떤 기업이 지분상품을 종업원에게 부여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거래는 종종 종속기업과 지배기업 상호협약에 의해 실행되는 바, 이런 상황에서 IFRIC 11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Section 12.2.3에서 설명하고 있다.

IFRIC 11은 지배기업의 회계처리 (Section 12.3 참조)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연결실체내 보상의 회계처리에 (Section 12.4 참조)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는 종속기업과 지배기업간 보상약정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다.

### 12.2.1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지배기업 지분상품의 권리를 부여한 경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지배기업 지분상품의 권리를 부여하고 연결재무제표상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된 경우, 종속기업은 자신의 개별재무제표상에 IFRS 2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용역을 측정하여야 한다. 동일한 금액이 자본계정에 지배기업에 의한 자본출자로 인식될 것이다. [IFRIC 11.8]

IFRIC 11.BC8은 종속기업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러한 거래는 IFRS 2의 주식결제형 또는 현금결제형 거래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IFRIC는 종속기업이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결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현금결제형 거래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주식결제형 회계처리가 IFRS 2에 보다 부합된다고 결정하였다.

IFRIC 11의 관련 규정은 매우 명확한 것으로서,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된 비용은 종업원의 용역을 제공받은 관련된 종속기업의 계정에 이전되어야(pushed down) 한다.

**예제 12.2.1**

지배기업 P사는 종속기업 S사의 주식 30주를 3년 용역제공기간 및 S사가 목표이익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종업원 100명에게 부여하였다.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는 CU 5이며, 계약체결 시, 1차 연도 말 및 2차 연도 말 시점에서 해당 목표이익이 향후 충족되고 퇴사하는 종업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3차 연도 말에 이익조건이 충족되었다.

S사의 회계처리

1~3차 연도 중에, S사는 IFRS 2에 따라 보상비용을 인식하고 자본에 지배회사로부터의 자본출자로 회계처리 한다.

차변)	당기손익	CU 5,000 [(CU5 X 30 X 100)/3년]
대변)	자본(자본출자)	CU 5,000

S사는 지배기업이 종업원에게 주식을 제공할 때 추가적인 분개가 필요 없다.

IFRS에 따르면 자본에 대기시 이를 자본내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다. 그러므로, S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적 요건에서 허용된다면 이익잉여금에 대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배기업은 아마도 종속기업 종업원들에게 특정기간 동안 연결실체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분상품을 부여할 것이다. 종업원은 그러므로 연결실체내 종속기업에서 다른 종속기업으로 옮겨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 종속기업들은 그들의 종업원들이 제공한 용역을 측정함에 있어서 지배기업으로부터의 부여일 현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또한 전체 용역제공기간 중 해당 종속기업에서 일한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다. [IFRIC 11.9]

연결실체 내에서 이동한 종업원의 경우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예: 용역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연결실체에서 퇴사하는 경우)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각 종속기업은 IFRS 2.19에 따라 이전에 인식했던 금액을 조정한다. 그 결과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었다면, 모든 종속기업 재무제표상에서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누적보상비용도 인식하지 않는다. [IFRIC 11.10]

관련된 모든 연결실체 내의 기업들이 가득일자에 조정(true-up)을 해야 하므로, 종업원이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으로 이동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후에 주식기준보상비용에 대해 조정을 해야 한다.

IFRIC 11은 현금결제형 약정하에서 종업원이 연결실체 내의 기업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이슈는 Section 12.5에 기술되어 있다.

### 12.2.2 종속기업이 자신의 종업원에게 지배기업 지분상품의 권리를 부여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지분상품을 자신의 종업원에게 부여할 때 종속기업은 해당 거래를 현금결제형 거래로 회계처리한다. 이 규정은 종속기업이 종업원에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분상품을 획득한 방법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IFRIC 11.11]

IFRIC 11.BC13은 종속기업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러한 거래는 IFRS 2의 주식결제형 또는 현금결제형 거래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배기업의 지분상품(이것은 종속기업이 취득했으므로 종속기업의 자산으로 인식된다)으로 종업원에게 결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현금결제형 거래로 인식하는 것이 IFRS 2와 보다 부합된다고 결정하였다.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주식결제형 거래인 반면 종속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Section 12.7에서 설명할 것이다.

IFRIC 11은 종속기업이 현금결제형에 따라 부채를 인식하였으나 지배기업이 대가 없이 주식을 지급함에 따라 현금지급을 하지 않게 된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 IFRS 2는 결제방식 선택권이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Chapter 7 참조), 이 규정들은 상기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IFRS 2가 언급하는 대상은 권리의 부여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이고, 상기 상황은 선택권이 제3자인 지배기업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무를 충족시킨다면 부채는 종속기업의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되어야 하고 지배기업으로부터 자본출자로 자본에 대기하여야 한다. 이미 인식한 보상비용은 취소하지 않는다.

### 12.2.3 권리를 부여한 기업의 결정

앞서 Section 12.2.1과 12.2.2에서 제시된 IFRIC 11의 규정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결실체 내에서 어떠한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권리를 부여했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특정한 상황과 사실에 대한 주의 깊은 판단을 요구한다. 다음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 주식보상약정의 계약 조건
- 권리를 부여받은 종업원에게 제공된 모든 형태의 공식 문서
- 종업원에게 제공된 모든 형태의 전달사항
- 약정이 한 종속기업에게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결실체 내의 여러 종속회사와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
- 공식적인 문서화 여부에 관계없는, 주식보상약정의 다른 측면들

앞에서 설명했듯이, IFRIC 11에 따르면 지배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종속기업이 부여했다면, 종속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지분상품을 취득하는지에 상관없이 종속기업은 이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하여야 한다.

## 12.3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

IFRIC 11에서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된 약정이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주식결제형 또는 현금결제형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지배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IFRIC D17(IFRIC 11의 공개초안)에 포함된 예시에는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가 다루어지고 있다. 지배기업의 회계처리는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IFRIC 11에서는 이 예제를 포함하지 않았다. D17에 포함된 예시에서는 약정이 연결실체와 종속회사 모두에게 주식결제형이 되도록 지배기업이 권리를 부여한 다음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상황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Section 12.3.1~12.3.3 참조).

### 12.3.1 연결실체와 종속기업의 주식결제형 거래

D17에 포함된 예시에서 지배기업은 IFRS 2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인식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차변에 투자계정을, 대변에 자본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D17에 포함된 결론 도출근거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논리적 근거는 종속기업이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것을 대신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보상을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배기업에 대한 상환금액으로 간주하여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본출자(종속기업이 공정가치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IFRIC 11이 '지배기업으로부터의 출자'라고 언급한, 종속기업에서 자본에 대기하는 방식과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의 원가를 증가시킬 때,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손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 예제 12.3.1A

관련 내용은 예제 12.2.1과 동일하다.

##### P사의 회계처리

1차 연도에서 3차 연도까지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증가와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자본금액을 계상하는 바, 이는 종속기업에 대한 자본출자 및 S사의 종업원에게 부여되는 지분상품을 나타낸다.

차변) 투자주식	CU 5,000	
대변) 자본		CU 5,000

지배기업은 주식을 종업원에게 이전할 때 추가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처리는 지배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느냐 아니면 기존 시장에서 매입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ESOP신탁이 관여하는 경우에도 역시 영향을 받는다.

종속기업이 비시장 가득조건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식보상비용을 조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배기업도 종속기업에 대한 자본출자금액을 조정한다. 이로 인하여 보통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에서 자본출자에 대하여 대칭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 예제 12.3.1B

관련 내용은 3차년도 말에 목표이익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예제 12.2.1과 동일하다.

#### P사의 회계처리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증가와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자본금액을 계상하는 바, 이는 종속기업에 대한 자본출자 및 S사의 종업원에게 부여되는 지분상품을 나타낸다.

차변) 투자주식	CU 5,000	
대변) 자본		CU 5,000

3차 연도 말에, 목표이익이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지배기업은 비시장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인식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차변) 자본	CU 10,000	
대변) 투자주식		CU 10,000

P사는 이러한 조정을 통해 S사의 회계처리와 정확히 대칭되도록 회계처리한다.

### 12.3.2 연결실체와 종속회사의 현금결제형 거래

주식기준보상이 연결실체와 종속회사 모두에게 현금결제형으로 인식되는 경우, 두 개의 서로 다른 상황이 존재한다. 첫 번째 상황은 종속기업이 현금이나 기타 자산(연결실체의 지분상품이 아닌)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상황은 지배기업이 현금이나 기타 자산(연결실체의 지분상품이 아닌)을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종속기업이 그의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배기업에게는 어떠한 회계처리도 필요하지 않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배기업은 현금 지급액을 자본출자로 기록하며 이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원가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약정은 Section 12.5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배기업이 종속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IFRS 2에 따라 부채를 계상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종속기업 을 대신해 부채를 인수함으로써 자본출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 계정으로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원가의 증가로 인식해야 한다.

### 12.3.3 연결실체에게는 주식결제형이지만 종속기업에게는 현금결제형인 경우

종속기업이 그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며 지배기업의 주식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그 의무를 충족시킬 때, 지배기업에게는 어떠한 회계처리도 필요하지 않다.

연결실체 내부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결제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지배기업이 사후에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하는 경우, 종속기업은 부채를 제거하고 대변에 자본출자로 인식한다 (Section 12.3.2 참조). 지배기업에 의해 자본출자로 인식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 연결재무제표에 주식결제형으로 인식된 금액
-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현금결제형으로 인식된 금액

지배기업이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분증권을 발행한 경우, 양자가 동일한 지분상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 자본으로 대기될 금액은 연결재무제표에 자본으로 대기된 금액과 동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견해가 더 논리적이며 IFRIC 11에 부합한다. IFRIC 11의 암묵적인 추론은 비록 연결실체는 부여일에 지분상품을 창출했지만, 지배기업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지배기업은 실제로 주식을 발행할 때 최초로 지분상품을 창출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의무를 면제하였으며 이는 종속기업이 받은 자본출자가 종속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던 의무와 동일한 금액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금액이 지배기업이 인식해야 할 금액이다.

이 원칙의 실무 적용에 대해서는 Section 12.7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 12.4 연결실체내 대가청구시 회계처리

IFRIC는 종속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상품 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연결실체내 보상약정의 회계처리를 IFRIC 11에서 논의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IFRIC 11.BC12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IFRIC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해석의 범위를 연결실체 내부의 보상약정까지 확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IFRIC D17(IFRIC 11의 공개초안)에 포함된 예시는 이러한 이슈에 대한 지침을 포함했었는데, 이는 IFRIC 11의 예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D17에 나오는 예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게 연결실체내 대가청구를 하는 경우, 그러한 대가 금액은 종속기업의 개별 재무제표와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자본출자로 인식한 금액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에 그러한 대가가 자본출자액을 초과한다면 그러한 초과분은 종속기업의 지배기업에 대한 분배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실상 D17에서는 비용과 변제금액간의 차이를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출자와 자본 분배로 설명하고 있다.

약정이 주식결제형인지 또는 현금결제형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IFRS에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연결실체내의 대가청구에 대해 상기 방법을 적용하라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D17에서 설명된 순액법은 타당해 보이며 아래에 제시될 지침은 이에 근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기준보상원가를 잘못 계상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도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제공받은 대가(자본출자의 형태로)와 지불된 금액(배분으로서)을 상계하지 않고 분리해서 기록할 수도 있다. 더욱이 지배기업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주식보상의 가득여부에 좌우된다면 종속기업은 변제의무를 파생상품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어떠한 방법이 채택되든지, 회계처리가 약정의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

기업간 대금청구 시점이 IFRS 2하에서의 비용인식 시점과 다르다면 복잡한 상황이 야기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했을 때만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사항들 중 일부는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다.

부담한 대가가 IFRS 2에 따라 인식된 비용보다 큰 경우는 전형적으로 대가가 주식선택권 행사시의 내재가치에 근거한 경우인데, 초과분은 자본의 분배로 계상된다. 따라서 이는 종속기업의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으나 지배기업의 수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초과 부담분이 자본 분배로 회계처리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법률적인 자본 분배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별로 상황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야 한다.

### 예제 12.4A

#### 약정기간 동안 변제

P사는 100명의 S사 종업원에게 각각 P사의 주식 30주를 3년간 용역제공조건하에 부여했다. 처음 부여할 때와 1차 연도 및 2차 연도 말에 모든 종업원이 3년간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3차년도 말에 아무도 퇴사하지 않았다. 부여일 현재 주식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CU 5이다.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종속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최종적으로 반영된 금액의 75%를 지불할 것이며,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에게 약정기간 동안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전체 기간 동안 총 CU 15,000을 부담하며 따라서 지배기업에게 CU 11,250(CU15,000 X 75%)을 지불해야 하므로 연간 3,750(11,250/3)을 지불할 것이다.

#### S사의 회계처리

3년간 종속기업은 IFRS 2 비용, P사에게 지급하는 현금 및 P사로부터의 자본출자를 인식한다.

차변) 손익	CU 5,000	
대변) 현금		CU 3,750
대변) 자본(자본출자)		CU 1,250

#### P사의 회계처리

3년간 지배기업은 부여되는 상품 대가로서 자본, S사로부터 변제받은 현금 및 종속회사에 대한 자본출자를 인식한다.

차변) 투자주식	CU 1,250	
차변) 현금	CU 3,750	
대변) 자본		CU 5,000

**예제 12.4B**

**약정의 종료시 변제 - 변제를 요청할 권리가 없는 경우**

S사가 주식이 가득된 약정의 종료시에 P사에게 변제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관련 내용은 예시 12.4A와 동일하다. 한편, 변제를 요청할 권리는 없으며, 가득시 변제에 대해 합의되었다.

S사의 회계처리

3년간 S사는 IFRS 2 비용과 P사로부터의 자본출자를 인식한다.

차변) 손익	CU 5,000	
대변) 자본(자본출자)		CU 5,000

3차 연도 말에 모든 주식이 가득되었고 S사는 P사에게 CU 11,250을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P사에 대한 자본 분배로 처리된다.

차변) 자본(분배)	CU 11,250	
대변) 현금		CU 11,250

P사의 회계처리

3년간 P사는 부여되는 상품을 자본으로, S사에 대한 자본출자로 인식한다.

차변) 투자주식	CU 5,000	
대변) 자본		CU 5,000

3차 연도 말에 모든 주식은 가득 되었고 S사는 P사에게 CU 11,250을 지급한다. 실질적으로 종속기업에 의한 자본의 반환이 아니라면, 지급액은 배당수익으로 처리된다.

차변) 현금	CU 11,250	
대변) 배당수익		CU 11,250

필요한 경우 P사는 S사에 대한 투자주식가액에 대해 손상을 인식해야 한다.

**예제 12.4C**

**약정의 종료시 변제 - 변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경우**

S사가 주식이 가득된 약정의 종료시에 P사에게 변제한다는 점을 제외한 관련 내용은 예시 12.4A와 동일하다. 한편, 부여 시점에 S사가 P사에게 S사의 손익계산서에 최종적으로 인식한 금액의 75%를 지불하는 구속력있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S사의 회계처리

3년간 S사는 IFRS 2 비용과, 이 금액의 75%를 연결실체내 채무로 나머지를 P사로부터의 자본출자로 인식한다.

차변) 손익	CU 5,000	
대변) 연결실체 채무		CU 3,750
대변) 자본(자본출자)		CU 1,250

3차년도 말에 모든 주식이 가득되었고 S사는 P사에게 CU 11,250을 지급하여 부채를 결제한다.

P사의 회계처리

3년간 P사는 부여되는 상품에 대한 자본 및 S사로부터의 채권을 인식한다.

차변) 연결실체내 채권	CU 3,750	
차변) 투자주식	CU 1,250	
대변) 자본		CU 5,000

3차년도 말에 모든 주식은 가득 되었고 S사는 P사에게 CU 11,250을 지급한다.

차변) 현금	CU 11,250	
대변) 연결실체내 채권		CU 11,250

(현재가치할인은 생략함)

일반적으로 가득시점의(또는 주식선택권의 실제 행사시의) 내재가치에 근거하여 변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종종 변제 금액이 IFRS 2에 따른 부여일에 인식된 공정가치를 초과하게 된다. IFRS 2에서 인식한 비용을 초과하는 변제금액은 종속기업에 의한 자본의 분배로 인식되며, 이는 다음 예제에서 설명된다. 단순화를 위해 변제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변제가 실제 행해지는 때에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렇지 않다면 S사는 매 결산일에 인식할 예상변제금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예제 12.4D

약정의 종료시 내재가치와 동일한 금액의 변제 - 변제를 요청할 권리가 없는 경우

S사가 주식이 약정의 종료시에 P사에게 동일자의 내재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변제한다는 점을 제외한 관련 내용은 예시 12.4A와 동일하다. 이 변제금액은 CU 25,000으로 추정되었다.

S사의 회계처리

3년간 S사는 IFRS 2 비용과 P사로부터의 자본출자를 인식한다.

차변) 손익 CU 5,000  
 대변) 자본(자본출자) CU 5,000

3차년도 말에 모든 주식이 가득되었고 S사는 P사에게 CU 25,000을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P사에 대한 자본 분배로 처리된다.

차변) 자본(분배) CU 25,000  
 대변) 현금 CU 25,000

P사의 회계처리

3년간 P사는 부여되는 상품을 자본으로, S사에 대한 자본출자로 인식한다.

차변) 투자주식 CU 5,000  
 대변) 자본 CU 5,000

3차년도 말에 모든 주식은 가득 되었고 S사는 P사에게 CU 25,000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S사로부터의 분배, 즉 P사의 수익으로 처리된다.

차변) 현금 CU 25,000  
 대변) 손익 (종속기업으로부터의 분배) CU 25,000

### 12.5 연결재무제표에서의 현금결제형 약정

IFRIC 11은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주식결제형으로 설명되지만 종속기업의 관점에서는 현금결제형으로 인식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약정이 연결재무제표에서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종속기업이 그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간단한 상황에서는 판단이 용이하다. 연결재무제표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인식되는 비용은 동일한 금액이다. 지배기업은 어떠한 회계처리도 할 필요가 없다.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지배기업이 현금을 지급하는 주가차액보상권 같은 현금결제형 약정에서는 종속기업은 현금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지분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IFRIC 11의 원칙을 적용하자면,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된 동일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바, 지배기업으로부터의 자본출자로 간주되는 금액을 자본에 대기한다. 지배기업은 현금지급액을 자본출자로 보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한다.

### 12.5.1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종업원 이동

IFRIC 11은 연결실체 내 기업간 종업원 이동이 주식결제형약정에 미치는 영향(Section 12.2.1 참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현금결제형약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각각의 경우에 연결실체 내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종업원에 대한 결재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른 부채를 인식해야 할지 고려하여야 하는 바, 이는 약정의 조건에 좌우된다.

종업원에게 부채를 결제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종속기업은 그 종업원이 가득시점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일 수 있다. 한편, 종속기업간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경우 인식한 부채를 이전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 번째 종속기업은 자본출자를 받은 반면, 두 번째 종속기업은 자본 분배 함으로써 다른 종속회사의 의무를 아무 대가 없이 결제하였다 (즉, 지배회사의 지시에 따라 분배를 하였다). 첫 번째 종속회사는 부채의 면제를 대변에 자본으로 회계처리해야 하고 두 번째 종속기업은 부채를 인식하고 이를 자본에 차기하여야 한다.

비록 첫 번째 종속기업이 부채를 인식하지 않게 되지만, 기존에 인식된 현금 결제금액을 취소하거나 조정하지는 않는다. 이는 IFRS 2.IG19의 지침과 부합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인식한 금액과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인식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금액은 이후의 부채 재측정에 의해서 조정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배기업이 부채를 결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종속기업들은 그들의 부채를 바로 앞에 다룬 상황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비용인식 금액은 가득시점까지 계속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종속기업이 전체 현금 결제금액 중 종업원이 종속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을 부담하기 위해서이다 (예제 12.5.1 참조). 이는 주식결제형약정하에서 종업원의 이동과 관련한 IFRIC 11의 논리에 부합된다. [IFRIC 11.9] 이러한 조정은 부채가 제거될 때 자본에 대기된 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자본에 반영된다.

#### 예제 12.5.1

##### 지배회사가 부채를 결제할 의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의 종업원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지배기업인 P사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종업원이 연결실체를 위해 3년간 근무할 경우 보상을 받게 된다. 지급할 금액은 P사 주식 1,000주에 해당하는 가치의 현금이며 부여일에 지배기업 주식의 가격은 CU 10, 1차년도 말에 CU 14, 2차년도 말에 CU 13 그리고 가득일에 CU 16이다. 보상은 P사에 의해 결제될 것이며 연결실체내 지급약정은 없다.

종업원은 종속기업 A에서 1차년도에 근무하고 종속기업 B로 이직해서 2차년도와 3차년도까지 근무했다.

연결실체에 의해 기록될 비용은 다음과 같다.

	누 적	당해연도
	CU	CU
1차년도: CU 1000 x 14 x 1/3	4,667	4,667
2차년도: CU 1000 x 13 x 2/3	8,667	4,000
3차년도: CU 1000 x 16 x 3/3	16,000	7,333

종속기업 A와 B에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종속기업A		종속기업B	
	누적 CU	당해연도 CU	누적 CU	당해연도 CU
1차년도 A = 1,000 × 14 × 1/3	4,667	4,667	-	-
2차년도 A = 1,000 × 13 × 1/3 B = 1,000 × 13 × 1/3	4,333	(334)	4,334	4,334
3차년도 A = 1,000 × 16 × 1/3 B = 1,000 × 16 × 2/3	5,333	1,000	10,667	6,333

## 12.6 ESOP신탁의 효과

ESOP신탁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 (Chapter 10 참조). 신탁의 자산과 부채가 후원기업의 것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신탁의 모든 의무가 후원기업의 의무로 간주된다.

이러한 분석은 신탁이 종속기업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달라질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신탁의 권리와 의무가 후원기업의 재무제표가 아닌 신탁 자신의 개별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각 경우 모두 IFRIC 11의 규정과 여기서 설명된 다른 지침들을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특히 앞의 Section 12.2.3은 권리부여의 주체가 누구이며, 따라서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 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세 회사가 약정에 관련되어 있다면 분석이 더욱 복잡해진다. 세 번째 기업은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고 주식을 종업원에게 인도하는 (직접 혹은 ESOP신탁을 통하여) 다른 종속기업이거나 또는 중간 지배기업일 수 있다.

## 12.7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종속기업은 종종 지배기업의 주식을 시장에서 또는 직접 지배기업에게서 구입할 필요가 있다.

종속기업이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득일에 시장에서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지불된 가격은 보통 이미 인식된 부채와 동일할 것이며 결제 과정에서 손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종속기업이 어떤 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또는 지배기업으로부터 자본출자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약정이 종속기업의 자본계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지배기업 역시 약정사항의 참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

다른 경우로서, 종속기업은 현금 결제를 위한 불확실한 부채 금액을 경제적으로 위험회피하고자 가득일 이전에 시장에서



주식을 구입하여 자산으로 보유할 수도 있으나, 이는 Section 12.7.1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IAS 39의 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거래가 현금결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현금의 불확실성을 감소 또는 제거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위험회피거래로 부르기도 한다.

지배기업이 자기의 주식을 종속기업에게 시장가격으로 발행하는 경우 종속기업의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매수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며 상기 지침이 적용되고, 지배기업은 적절한 대가를 받고 주식을 발행한 경우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주식을 구입했을 때 그 주식은 비록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자기주식이지만 종속기업의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금융자산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주식은 “매도가능증권”(일반적인 경우) 또는 IAS 39의 관련 조건이 충족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될 것이다.

자산이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산이나 부채 또는 관련된 평가손익을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측정할 때 발생하는 불일치(종종 “회계 불일치(Accounting mismatch)”라고 불린다)를 상당히 줄이거나 제거함으로써 좀더 적절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을 때이다.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함에 따라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특정 사실과 상황에 대한 주의 깊은 분석을 필요로 한다.

주식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경우, 자본에 포함되어 있는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점(주식이 종업원에게 교부될 때)에 당기손익으로 처리될 것이다.

### 12.7.1 IAS 39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Section 12.7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록 경제적 위험회피는 일부 주식기준보상에서 달성가능하더라도, IAS 39 “금융 상품: 인식과 측정”은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IAS 39에서는 자본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인식한 부채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주식(직접 보유하고 있던지 아니면 ESOP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지 간에)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종속기업은 지배기업 주식에 대한 옵션을 매입하여 이를 예상되는 종업원비용을 위험회피하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자 할 수 있으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효과성과 관련한 규정을 포함한 IAS 39의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제반 규정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실무적으로 많은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의 위험회피회계를 통한 효익이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13.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주식기준보상이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IAS 12 “법인세”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의 주식, 주식선택권 또는 다른 지분상품으로 지불되는 보상과 관련하여 세공제를 받는다. 이러한 공제금액은 관련된 누적보상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미래 회계기간에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IFRS 2에 따라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대가로 받은 근무용역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주식선택권이 실제 행사되기 전에는 행사일의 기업의 주가에 기초하여 계산된 세공제를 받을 수 없다. [IAS 12.68A]

현재까지 제공받은 종업원 근무용역의 세무기준액(미래 회계기간에 과세당국이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도록 인정하는 금액)과 영(0)인 장부금액의 차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되고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시킨다. 과세당국이 미래 회계기간에 차감되도록 인정하는 금액을 회계기간 말에 알 수 없다면, 이용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예를 들어, 과세당국이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주가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경우, 회계기간 말 현재의 주가에 근거하여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IAS 12.68B]

세공제액(또는 예상되는 미래 세공제액)은 누적보상비용과 다를 수 있다. IAS 12.58에서는 당기 및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기준보상의 세공제액(또는 예상되는 미래의 세공제액)이 관련된 누적보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세공제액이 누적보상비용뿐만 아니라 자본에 대한 공제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관련된 당기 및 이연법인세는 직접 자본에 인식해야 한다. [IAS 12.68C]

자본으로 인식된 이러한 초과분은 기업의 경영성과보다는 기업 지분상품의 발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기업의 인식손익표(Statement of Recognised Income and Expense – SORIE)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IAS 12.68C에서 분명하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만을 다룬다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논리상으로 초과 공제는 보상비용뿐만 아니라 자본항목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공제액이 관련될 수 있는 자본항목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공제액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업원보상제도가 변경된 경우(예를 들어, 주식결제형에서 현금결제형으로 변경 등), 이러한 회계처리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다 (예: 부채의 인식).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변경이 이연법인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IAS 12 Appendix B는 종업원 보상제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 예를 들고 있다.

### 예제13 종업원 주식보상제도에서의 이연법인세

[IAS12Appendix B Example 5]

IFRS 2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기업은 부여된 주식선택권에 대한 대가로 제공받은 종업원의 근무용역을 비용처리하고 있다. 세공제는 이 주식선택권이 실제 행사되기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세공제액은 행사일의 내재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IAS 12.68B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현재까지 제공받은 종업원 근무용역의 세무기준액(미래 회계기간에 과세당국이 과세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인정하는 금액)과 영(0)인 장부금액의 차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되고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시킨다. 과세당국이 미래 회계기간에 차감되도록 인정하는 금액을 회계기간 말에 알 수 없다면, 이용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예를 들어, 과세당국이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주가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경우, 회계기간 말 현재의 주가에 근거하여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예제에서는 추정된 미래 세공제액의 측정(그리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은 회계기간 말 현재 주식선택권의 내재가치에 근거하여야 한다.

IAS 12.68C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공제액(또는 미래 세공제의 추정액)이 관련 누적보상비용을 초과한다면, 이는 세공제가 보상비용 뿐만 아니라 자본항목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관련된 당기 또는 이연법인세 초과액은 자본에 직접 인식되어야 한다.

기업의 세율이 40%이다. 기업은 주식선택권을 1차 연도 초에 부여하였고, 3차 연도 말에 가득되며, 5차년도 말에 행사되었다. 각 연도별 종업원근무용역비용, 각 연도 말 주식선택권의 수 및 각 연도 말 주식선택권의 내재가치는 아래와 같다.

	종업원 근무용역비용	연도 말 주식선택권 수	주식선택권 단위당 내재가치
1차년도	188,000	50,000	5
2차년도	185,000	45,000	8
3차년도	190,000	40,000	13
4차년도	-	40,000	17
5차년도	-	40,000	20

기업은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이익을 인식하고, 5차년도에 당기법인세이익을 아래와 같이 인식한다. 4차년도와 5차년도에 추정(또는 실제) 세공제액이 누적보상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중 일부가 자본에 직접 인식된다.

[1차년도]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이익:

$$(50,000 \times 5 \times 1/3 \times 40\%)(*) = 33,333$$

(\*) 제공받은 종업원근무용역의 세무기준액은 주식선택권의 내재가치에 근거하고, 주식선택권은 3년 용역제공조건으로 부여되었다. 회계연도 말까지 1년의 용역제공이 있었으므로 1차년도에 제공받은 근무용역의 세무기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식선택권의 내재가치에 1/3을 곱해야 한다.

이연법인세이익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이는 추정 세공제액(50,000x 5x 1/3= 83,333)이 누적비용(188,000)보다 작기 때문이다.

[2차년도]

기말 이연법인세자산:

$(45,000 \times 8 \times 2/3 \times 40\%) =$	96,000
차감: 기초 이연법인세자산	<u>(33,333)</u>
당해 연도 이연법인세이익	62,667*

\*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세무상 종업원비용과 장부상 금액인 0간의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이익:

$(45,000 \times 8 \times 1/3 \times 40\%)$	48,000
--	--------

전년도 종업원비용의 세무기준액 조정에서 발생한 법인세이익:

내재가치의 증가: $(45,000 \times 3 \times 1/3 \times 40\%)$	18,000
주식선택권 수의 감소: $(5,000 \times 5 \times 1/3 \times 40\%)$	<u>(3,333)</u>
이연법인세이익	62,667

추정 미래 세공제액인 240,000 ( $45,000 \times 8 \times 2/3$ )이 누적보상비용인 373,000 ( $188,000+185,000$ )보다 작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이익은 모두 손익으로 인식된다.

[3차년도]

기말 이연법인세자산:

$(40,000 \times 13 \times 40\%) =$	208,000
차감: 기초 이연법인세자산	<u>(96,000)</u>
당해 연도 이연법인세이익	112,000

추정 미래 세공제액인 520,000 ( $40,000 \times 13$ )이 누적보상비용인 563,000 ( $188,000+185,000+190,000$ )보다 작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이익은 모두 손익으로 인식된다.

[4차년도]

기말 이연법인세자산:

$(40,000 \times 17 \times 40\%) =$	272,000
차감: 기초 이연법인세자산	<u>(208,000)</u>
당해 연도 이연법인세이익	64,000

이연법인세이익은 아래와 같이 일부는 손익으로 인식하고 일부는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추정 미래 세공제액(40,000 x 17) =	680,000
누적보상비용	563,000
초과 세공제액	117,000

당해 연도 이연법인세이익	64,000
자본에 직접 인식한 초과분(117,000 x 40%) =	46,800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17,200

[5차년도]

이연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	272,000
자본에 직접 인식한 금액	
(자본에 직접 인식한 누적 이연법인세이익의 환입)	46,800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225,200

행사일의 내재가치에 근거한 당기법인세	
(40,000 x 20 x 40%) =	320,000
손익으로 인식한 부분 (563,000 x 40%) =	225,200
자본으로 인식한 부분	94,800

요약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종업원 근무용역비용	당기법인세 비용(이익)	이연법인세 비용(이익)	총법인세 비용(이익)	자본	이연법인세 자산
1차년도	188,000	-	(33,333)	(33,333)	-	33,333
2차년도	185,000	-	(62,667)	(62,667)	-	96,000
3차년도	190,000	-	(112,000)	(112,000)	-	208,000
4차년도	-	-	(17,200)	(17,200)	(46,800)	272,000
5차년도	-	(225,200)	225,200	-	46,800	-
					(94,800)	
합계	563,000	(225,200)	-	(225,200)	(94,800)	-

## 부록 1 - IFRS와 US GAAP의 비교

다음은 IFRS 2의 규정과 미국의 SFAS 123 “Accounting for Stock-Based Compensation”의 규정을 매우 간략히 비교한 것이다. 주요 차이점만 표시하였으며, 아래 요약이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차이 또는 기타 있을 수 있는 차이를 모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래는 실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차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주제	IFRS	US GAAP
비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의 측정기준일	변형된 부여일 측정방법	거래상대방이 실행하기로 약정한 날 (미실행시 매우 큰 불이익이 있는 경우)과 실제 실행일 중 빠른 날
성과조건의 변경에 따른 보상의 변경 (발생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발생가능한 상태로) (유형 3의 변경)	부여일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된 비용	조건변경일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된 비용
단계적 가득조건하의 주식기준보상	가득이 될 때 이를 반영하도록 가속적으로 비용 인식	다음 두 가지 회계정책 중 선택가능 a) 가장 긴 가득기간 동안 정액법으 로 총비용을 상각 b) IFRS와 유사하게 비용 인식
주식기준보상의 대차대조표상 분류	주식기준보상이 현금으로 결제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둠	좀 더 자세한 요구조건으로 인해 더 많은 주식기준보상이 부채로 인식됨
주식기준보상에 부과된 세금의 인식	부여일 또는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가득기간동안 부채를 인식	세금이 부과될 때(예: 행사시) 부채로 인식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세금 혜택의 계산	이연법인세는 관련 세법에 따라 (예: 내재가치)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세공제액에 근거하여 계산됨.	이연법인세는 회계상 비용에 근거하 여 계산되고, 세무상 실현될 때 이를 조정

## 부록 2 - 평가모형

이 부록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옵션가격결정모형들 중에서 세가지 모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각 모형의 장단점을 기술하고 있다.

### 블랙숄츠 (Black-Scholes)

블랙숄츠모형은 계산이 용이하고 아래와 같은 6가지의 자료만 필요하다.

- 부여일의 주가
- 행사가격
- 배당수익률
- 기대존속기간
- 무위험이자율
- 변동성

블랙숄츠모형은 옵션의 행사는 특정 시점에 오직 한번만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옵션이 언제 행사될 것인가와 관련하여 기대존속기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며, 가변적인 행사일을 적용할 수 없다.

블랙숄츠모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주식선택권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 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들간의 비교가능성을 증진시킨다.
- 공정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 이해하기 쉬우며, 스프레드시트에 쉽게 포함할 수 있다.

블랙숄츠모형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블랙숄츠모형은 옵션은 단 한번 행사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가변적인 행사일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모형은 기대존속기간 말에 외가격 상태인 옵션은 무가치하게 소멸될 것으로 기대하여 옵션을 저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옵션은 사후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전에 내가격 상태로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가치가 있다. 따라서, 행사가능기간이 길고, 행사시 행사가능기간 중의 특정시점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 블랙숄츠모형은 입력요소와 가정이 옵션이 존속 중인 전체 기간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폐쇄형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인 주식의 변동성은 기간 동안 변할 수 있으나, 블랙숄츠모형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 블랙숄츠모형은 변형하여 일부 시장에 기초한 성과조건을 처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시장에 기초한 성과조건을 고려할 수 없다.

## 이항모형(Binomial Model)

이항모형은 만기까지의 기간을 상당히 많은 시간간격이나 단계로 나누고 있다. 주식가격수형도(Tree of share prices)는 최초에 현재시점부터 옵션의 만기까지 전진적으로 작성된다. 각 단계마다 변동성과 각 시간간격을 고려하여 계산된 금액만큼 주식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가정한다. 상승과 하락의 확률은 무위험수익률과 상승 및 하락의 폭에서 산출된 위험중립확률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식가격의 이항분포 또는 수형도를 얻게 된다. 이러한 수형도는 옵션의 기간 동안 기초주식가격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대표하게 된다. 배당과 같이 주식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주식선택권계약기간 동안 배당이 지급될 때 이항모형에서 수정된다. 수형도의 마지막은 옵션의 만기이며, 각 가능한 최종 주식가격들에 따른 옵션의 청산 금액들은 단순히 각 내재가치와 동일하다.

다음으로, 각 단계의 옵션의 가치는 만기에서 현재시점으로 소급되어 계산된다. 각 단계의 옵션가치는 가치중립적인 평가를 사용하여 각 선행단계의 옵션가치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가치중립적인 평가는 무위험이자율을 할인률로 사용하고 주식가격의 상승 및 하락의 가치중립확률을 이용한다. 옵션가격의 어떤 조정(예를 들면, 시장성과조건)은 필요한 때에(비록 모든 시장성과조건이 포함되지는 않을지라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이것을 다른 접근방법, 예를 들어 몬테카를로 모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형도가 출발하는 단계에서의 옵션의 공정가치를 구할 수 있다.

만일 블랙숄츠모형과 이항모형에 사용된 입력정보와 가정이 동일하다면, 결과는 비슷할 것이다.

이항모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이항모형은 “열린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옵션의 기간 동안 변수의 다양한 값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형의 입력정보가 장기의 옵션을 더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가변적인 행사일자를 고려할 수 있는 반면에 블랙숄츠모형은 옵션이 오직 한 번 특정일에만 행사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 이 모형은 시장조건 및 다른 조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다.
- 이항모형은 또한 블랙숄츠모형을 대체하는 좀 더 유연한 모형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항모형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블랙숄츠모형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스프레드쉬트나 옵션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항모형은 상당히 복잡한 스프레드쉬트나 옵션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추가적으로 다양한 변수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상당히 많은 판단이 요구된다.

## 몬테카를로모형(Monte Carlo Model)

몬테카를로모형은 주식가격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하여 많은 양의 추정 산출물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다. 관련 주식가격은 기업의 것일 수도 있고, 비교가능한 다른 기업들의 주식가격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각 모의실험된 주식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득될 주식보상부분과 이에 따른 지급액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한 후에 무위험



이자율로 평가일까지 할인될 것이다. 평가일 현재의 주식선택권의 기대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이런 절차는 수 차례 반복 될 것이다.

몬테카를로모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 설명한 모형 중 가장 유연한 모형이다. 상당히 복잡한 시장조건, 행사 행태 및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 결과를 설명하거나 이해하기가 더 용이하다.
- 결과의 분포를 파악하는데 사용가능하다.

몬테카를로모형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옵션의 가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나 아주 복잡한 스프레드시트가 필요하다.
- 상당히 정확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만 번 이상의 모의실험이 필요하다. 모형의 속성에 따라, 이는 상당한 컴퓨터 처리시간이 필요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이는 주로 다른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부록 3 – 표시 및 공시사항 점검표

관련 조문	표시 및 공시사항
	<p>IFRS 2 Implementation Guidance에서는 문단 44~52의 공시사항을 충족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제는 문단 47(c), 48 및 49의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p>
	<p><b>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성격과 범위</b></p>
IFRS 2.44	<p>재무제표이용자가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성격과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식으로 기재한다.</p>
	<p>아래 문단 45는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p>
IFRS 2.45(a)	<p>기업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주식으로 기재한다.</p> <p>a)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각 유형에 대한 기술 (각 약정의 일반 조건을 포함)</p>
IFRS 2.45(a)	<p>주식기준보상약정의 일반 조건은 가득조건,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최장 만기, 결제방식(현금이나 주식) 등과 같은 조건을 포함한다.</p>
IFRS 2.45(a)	<p>문단 44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각각의 약정별로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비슷한 여러 개의 주식기준보상약정을 통합하여 기술할 수 있다.</p>
IFRS 2.45(b)	<p>b) 다음 각각에 대한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회계기간 초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li> <li>ii) 회계기간에 부여한 주식선택권</li> <li>iii) 회계기간에 상실된 주식선택권</li> <li>iv) 회계기간에 행사된 주식선택권</li> <li>v) 회계기간에 만기 소멸된 주식선택권</li> <li>vi) 회계기간 말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li> <li>vii) 회계기간 말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선택권</li> </ul>
IFRS 2.45(c)	<p>c) 회계기간에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행사일 현재 주가의 가중평균</p>

관련 조문	표시 및 공시사항
IFRS 2.45(c)	주식선택권이 회계기간에 규칙적으로 행사된 경우에는 회계기간의 가중평균주가를 주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IFRS 2.45(d)	d) 회계기간 말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범위와 가중평균잔여만기
IFRS 2.45(d)	행사가격 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에는 주식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의 수와 발행시기, 그리고 행사 대금으로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수준으로 범위를 세분할 필요가 있다.
<b>회계기간 중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기준</b>	
IFRS 2.46	재무제표이용자가 회계기간에 제공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식으로 기재한다.
아래 문단 47~49는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IFRS 2.47 (a)	<p>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는 경우에, 기업은 회계기간중 부여한 <u>주식선택권</u>에 대하여 최소한 다음 사항을 주식으로 기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주식선택권의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의 가중평균</li> <li>b)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사용된 옵션가격결정모형</li> <li>ii) 그 모형의 가격결정요소에 대한 정보, 가격결정요소에는 가중평균 주가, 행사가격, 기대주가변동성, 만기, 기대배당금, 무위험이자율 등이 포함되며, 기대되는 조기행사의 효과를 모형 안에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과 가정에 관한 정보도 함께 주식으로 기재한다.</li> <li>iii) 기대주가변동성의 결정방법에 관한 정보, 이와 관련하여 기대주가변동성이 과거의 주가변동성에 기초하고 있는 정도에 관한 설명도 주석에 포함한다.</li> <li>iv) 주식선택권의 기타특성(예: 시장성과조건 등)이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모형 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반영된 경우 그 방법에 관한 정보</li> </ul> </li> </ul>
IFRS 2.47(b)	<p>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는 경우에, 기업은 회계기간중 부여한 <u>주식선택권이 아닌 지분상품</u>에 대하여 최소한 다음 사항을 주식으로 기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측정기준일 현재 지분상품의 수량과 공정가치의 가중평균</li> <li>b)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공정가치가 관측할 수 있는 시장주가에 기초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결정방법에 관한 정보</li> </ul> </li> </ul>

관련 조문	표시 및 공시사항
IFRS 2.47(c)	<p>ii) 기대배당금이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반영된 경우 그 방법에 관한 정보</p> <p>iii) 지분상품의 기타특성이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반영된 경우 그 방법에 관한 정보</p> <p>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는 경우에, 기업은 회계기간중 조건변경된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하여 최소한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p> <p>i) 조건변경에 대한 설명</p> <p>ii) 조건변경의 결과로 발생한 증분공정가치</p> <p>iii) 증분공정가치 측정방법에 관한 정보, 이 정보는 문단 47(a)와 47(b)에서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관하여 요구하고 있는 주석사항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p>
IFRS 2.48	<p>회계기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공정가치가 재화나 용역의 시장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p>
IFRS 2.49	<p>문단 13을 적용할 때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부여한 지분상품에 근거하여 측정한 경우) 그러한 사실과 이유에 대한 설명을 주석으로 기재한다.</p>
<p><b>주식기준보상거래가 회계기간의 손익 및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b></p>	
IFRS 2.50	<p>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p>
<p>아래 문단 51은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p>	
<p>기업은 최소한 아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p>	
IFRS 2.51(a)	<p>a)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해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총비용</p>
IFRS 2.51(a)	<p>b) 총비용 중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비용</p>
IFRS 2.51(b)	<p>c)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총장부금액</p>
IFRS 2.51(b)	<p>d) 거래상대방이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 주가차액보상권)를 대차대조표일 현재 가득한 경우,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의 대차대조표일 현재 총내재가치</p>
<p><b>추가 정보</b></p>	
IFRS 2.52	<p>이 기준서에서 주석으로 요구하는 정보만으로는 문단 44, 46 및 50의 원칙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p>